

교육에 던져진 질문들

| 특집 | 코로나19가 교육에 던진 질문
| 기획 | 인권이 교육에 던진 질문

경남교육정책매거진 **다감**



교육에 던져진 질문들

경남교육정책매거진 **다감**



[다감] 2호를 열며

10월 4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한 연구소에서 역학, 공중보건, 감염학을 각각 전공한 세 사람이 모여 코로나19에 관한 선언문을 하나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레이트배링턴 선언’이라고 이름 붙인 이 선언문은 “현재의 봉쇄 전략이 아이들, 노동자 계급 및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공중보건 및 인도주의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응의 중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명의 사람들은 이 선언문을 공개했고 10월이 끝나기 전에 6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언문에 동의하고 서명했습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처음 모여 자신들이 만든 선언문에 6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추측하건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적은 수이지만 모여 선언문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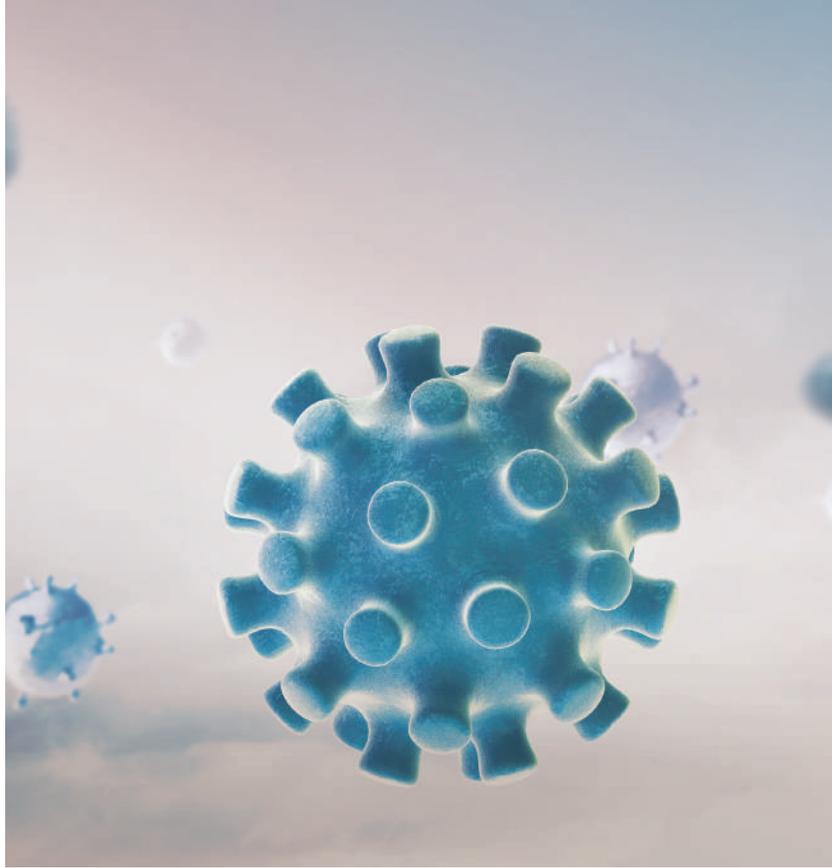
1호에 이어 2호에도 코로나와 관련한 특집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에 끼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한 걸음 물러나 다른 것들도 둘러 보아야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럼에도 코로나를 빼고 지금의 교육을 말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코로나를 놓치 않으면서 하지만 우리가 짚어야 할 질문들을 찾아보는 2호를 기획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하는지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던 상반기에서 조금은 더 나아가 우리가 지키고 가져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세 명이 모여 만든 ‘그레이트배링턴 선언’처럼 경남교육정책매거진 「다감」2호가 여러분에게 뭔가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경남교육정책매거진 「다감」 편집위원회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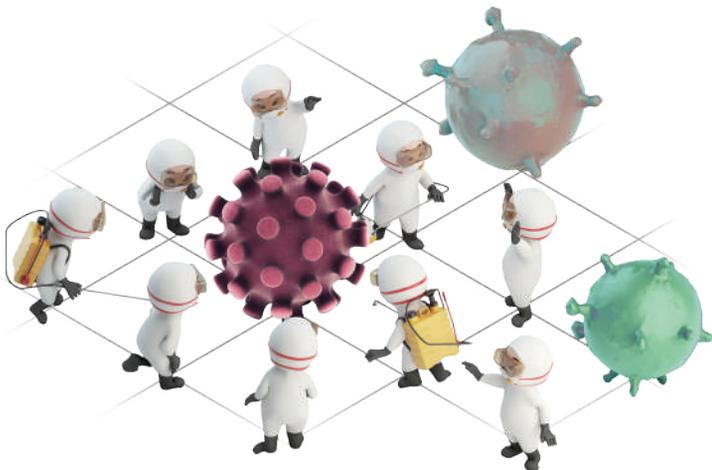


03 여는 글
다감 편집위원회

<특집> 코로나19가 교육에 던진 질문

08 변하지 않은 교육, 변하지 않은 질문
조영선(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교사)

18 코로나19와 신조어 광풍
박도영(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구성작가)





<기획> 인권이 교육에 던진 질문

26

자신을 탐색하는 인권교육으로의 전환

이희진(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38

삶을 위한 교육,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전명훈(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

50

인권으로서 '놀이 권리'

고영남(인제대학교 교수)

58

인권, 보호를 넘어 사회권으로

공 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64

인포그래픽 이슈플러스생각

인포그래픽 이슈플러스생각③ 경남교육정책포럼, 경남미래교육을 이야기하다

인포그래픽 이슈플러스생각④ 경남교육정책에 대한 교직원 인식 조사

인포그래픽 이슈플러스생각⑤ 2020.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I

인포그래픽 이슈플러스생각⑥ 2020.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II

교육에 던져진 질문들

경남교육정책매거진

다감

팬데믹 (pandemic)

언택트 (untact)

온택트 (ontact)

포스트 코로나 (post corona)

뉴 노멀 (new normal)

홈코노미 (homeconomy)

홈택트 라이프 (Hometact Life)

긱 경제 (gig economy)

썸택 (Thumbtack)

에듀테크 (edu+tech)

편집자 주

처음의 생각과 다르게
코로나19의 유행이 길어지고 있다.
초기의 혼란을 각자의 지혜로 헤쳐 나가고
조금은 안정되었다는 평가도 내려지는 지금,
그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코로나19가 교육에 던지고 있는 질문을 짚어본다.

다감

<특집>

코로나19가 교육에 던진 질문

변하지 않은 교육, 변하지 않은 질문 _08

조영선(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교사)

코로나19와 신조어 광풍 _18

박도영(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구성작가)



변하지 않은 교육, 변하지 않은 질문

조영선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교사
<인권을 만난 교육, 인권을 만난 인권>, <학생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의 풍경> 저자

올해 고 3 담임을 지원했다. 18세의 첫 선거를 함께 하고 싶다는 부푼 꿈이 있어서였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계속 연기되었다. 답답하긴 했지만 일종의 ‘전시 상황’이고 ‘대피 상황’이라 스스로 다독였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우리 학교는 블록 수업으로 시간표를 짜서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수업이 가능한가 시험에 보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과제를 냈다. 콘텐츠를 통한 과제 제시형은 학생들에게 비교적 수월했지만, 여러 가지 형식의 과제에는 버거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보였다. 특히 클릭을 5번이나 했는데 과제가 미제출로 나왔다는 학생도 있었다. 결국 그 학생에게는 학교에 오라고 했다. 처음으로 우리 반 학생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ZOOM 등의 프로그램을 써 볼까 하고 본격 개학 전에 구글 미트로 만나자는 내용을 학급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렸다. 24명 중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신청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구글 미트에 접속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되니 몇몇 학생은 일이 생겨서 어렵다며 불참했다. 겨우 8명의 학생을 만났다. 얼굴을 본 것이 정말 반가웠지만 4명은 집 밖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어색해했다.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도 있었지만 “안녕하세요?” 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나니 침묵이었다. 그나마도 접속한 기기에 따라 소리의 전달 속도가 달라 대화를 이어 나가기 어려웠다. 결국 한 사람씩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학생들을 단체 방에서 내보냈다. 나중에 물어보니 집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 일부러 독서실이나 카페에 갔다는 학생도 있었다. 신청했다가 취소한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들어가려고 했는데 늦게 일어나서 화장을 못했다고 했다. 자신을 소개하는 5초 동영상을 이불 속이나 복도에서 찍은 학생들도 있었다. ‘집콕’ 중이라 바깥에서 찍기는 어려웠고, 각자의 가림막을 쓴 것이리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 세대들에게도 온라인으로 사생활이 아닌 ‘공생활’을 하는 것이 처음이구나, 친한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는 것과 수업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해 보니 우리는 2020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끼리 자신의 방 또는 집을 공개하면서 얼굴을 보고 만나는 일은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

오히려 오프라인 만남에서는 자신이 맺는 관계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정보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면서 무차별적으로 열려버린 것이다. 온라인 수업에서 화면 캡처나 욕설은 ‘학폭’이라며 학생을 협박하는 교육 자료들은 엄청 떠돌아다녔다. 하지만 정작 온라인 수업의 형태를 결정하면서는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깡그리 무시된 것이다.

‘실시간’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쌍방향’은 불가능했다. 학생들의 말이 띄엄띄엄 들려서 원래 그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해되기도 해서 학생들이 몇 번 말을 하다 멈추기도 했다. 결국 ZOOM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수업은 ‘실시간 단방향’ 수업이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것을 태연하게 쌍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것이 미래교육이라고도 했다. 돌이켜보면 교육부는 오프라인 교실에서도 어떻게 해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지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다.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발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잘못된 발표가 생활기록부 기재의 근거가 될까봐 학생들은 조마조마해 한다. 오직 비판받을 가능성이 없는 정답 발표만이 존재한다. 소통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론 점수가 되는 소통만 허용될 뿐 교실은 불통 중인 것이다. 오프라인에서도 이러했으니, 온라인 수업에서 소통이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대해 진정 궁금해할 리가 없다. 그저 학생들을 컴퓨터 앞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붙들어 놓을 명분만 마련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학교들은 학생들의 시간 뿐 아니라 화면으로 보이는 용의 복장까지 통제하기도 했다. 실제로 어느 학부모는 학교에서 ZOOM으로 수업하면서 하도 교복을 입으라고 해 학생이 상의만 교복을 갖춰 입고는 덤다며 하의는 트렁크만 입고 있어 난감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은 ‘통제’인 것이다.

문제는 기기가 아니라 소통

나의 핵심적 문제의식은, 접속을 위한 기기와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개인에게 맡겨진 상황에서 가장 적은 데이터를 쓰며 단순한 기기로도 접근 가능한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학기 초 학생과 교사가, 또 학생끼리도 전혀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이 드러나는 일은 학생들에게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집중은 극과 극이다. 대면이 아니기에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는 수십 배의 에너지가 들고, 그것을 포기하면 그냥 누워서 돌려도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몸에 맞게 학습량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져야 하는데도, 오프라인 시간표만을 고집하는 것이 실시간 쌍방향의 미래 교육이라는 주장에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나는 당당하게 EBS 강의를 걸었다.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해 소개할 때도 3학년 때는 EBS 연계 교재를 가지고 학교 수업을 하는데 연계 교재는 내가 쓴 게 아니어서 EBS 강사들이 더 잘 가르치고, 문제와 풀이를 보여 주는 전자 칠판도 학교보다 EBS가 더 품질이 좋아서 잘 보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제를 풀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나는 점을 비공개 댓글에 남겨 주면 꼬박꼬박 답하겠다고 했다. ‘정말 질문이 달릴까?’ 고민했는데 비공개 댓글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질문이 잘 들어왔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 다음 차시 전에 전체 피드백을 하였다.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잘 하고 나니 질문 개수가 점점 늘었다. 어떤 학생들은 오프라인 때보다 질문하기가 더 편하다고도 했다. 나도 즉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찾아 보고 답할 수 있어서 편했다.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질문과 답변, 피드백을 통해 조금씩 관계를 쌓아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얼굴이 보이는지,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에서의 반응도 신뢰가 쌓이는 만큼만 확장될 수 있었다. 서로의 기기나 환경 차이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화려하지 않은 수업 포맷에, 작은 피드백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씩이나마 신뢰를 쌓아 가는 길이었다. 학생들끼리의 모둠 토론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했다. 실제 만나 보지 않은 사이에 중간중간 끊기는 말로 토론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온라인 수업에서 소통이 일어나려면 오프라인 만남이 병행되어야 했다. 기술은 대면에서의 소통을 뛰어넘지 못했다.

코로나19 시대의 출결, 그리고 평가

등교 개학후 가장 많이 바뀐 것이 출결지침이었다. 이번 온라인 개학이 교육의 선진화인 양 자화자찬하지만, 온라인개학이 ‘가능’하다고 여기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출결’이라는 이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온라인 상황에서도 학교에 ‘존재’했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열이 나면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교중지’ 명령이 뜨고, 가고 싶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사실 청소년이든 비청소년이든 열이 날 정도로 아프면 학교나 일터에 가지 않아야 한다. 불철주야 아픈 몸을 이끌고 출석 혹은 출근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대한민국에서 개인방역 제1수칙, <아프면 쉬기>가 전염병이 창궐하고 나서야 ‘정상’으로 인정된 것이다.¹⁾

그런데 아직 이에 적응하지 못한, 또는 건강보다 입시가 중요한 일부 학생들은 예전 그대로였다. 등교 다음날 바로 치른 모의고사에서 중간에 열이 높아 시험 중단 조치를 받은 한 학생은 자신의 인생이 걸렸으며 결국 구급차를 타지 않고 별도 교실에서 시험을 봤다. 고3이라는 학생의 절박함도 이해가 되지만 전염병이 창궐해도 입시를 향해가는 열차는 출발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는 장면이었다.

출결은 온라인으로 가능했지만 평가는 온라인으로 불가능했다.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자마자 모의고사를 보고 또 열흘 만에 중간고사를 본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공교육 자체의 가장 큰 의미가 ‘평가’라는 것을 교사와 학생 모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1)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가면서 다시 예전의 출결관리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파서 3~4일 쉬기 위해서는 꼭 병원의 진단서가 있어야한다. 코로나19 의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별진료소 방문기록이 있어야한다. 아프다고 그냥 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코로나19가 교육에 질문하는 것

학생들이 방역지침을 지키기 어렵다는 인식은 학생들에게 거리두기를 ‘강제’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학교 이하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학생들의 쉬는 시간을 아예 없앤다든지,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벌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의 재미있는 점은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유지되려면 내가 한쪽으로 움직일 때 그 반대쪽도 그만큼 움직여줘야 한다. 즉 한정된 공간에서 거리두기를 유지시킨다는 것은 한 사람이 움직일 때 그 간격이 유지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우리가 왜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둘 권리’가 왜 중요한지 인식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솔직히 매일 등교하는 고3 기준으로는 거리두기 지침이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 매일 등교를 하는 상황에서 수업시간에만 거리를 두는 척하고 식사만 조금 떨어져서 할 뿐이다. 따라서 한 학생이라도 발병하면 집단감염은 시간문제이다. 자가진단을 한다고 하지만, 무증상 감염도 흔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현재의 고3은 하루하루를 운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운’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책임 회피에 가까운 상태다. 어떤 선택을 하든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과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도 똑같이 책임회피가 가능한 방법으로만 돌아간다. 학생들 스스로 팬데믹의 사안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왜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고 ‘나 수업했어’, ‘시험 보고 있어’, ‘학교는 안 와도 돼’ 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을 보내면서 전세계를 섯다운시키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삶, 특히 한국 교육에 질문하는 것이 무엇일까?

줄 세우기 입시와 방역 사이의 모순. 이 모두의 핵심에는 입시가 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하여 상대적인 등수를 내어 대학을 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개학을 하자마자 하루 종일 시험을 친다. 빨리

모의고사를 봐야 상대적인 위치를 알고 정시로 갈지 수시로 갈지 입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여론에 등 떠밀린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느끼고 입시가 의미 없다는 학생들이 시험 선택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교육부에서 허가한 체험학습을 쓰겠다고 하면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 한 학교라도 시험을 못 치게 되면, 그 학교 학생들을 빼고 성적을 내면 그 성적은 입시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모의고사에 대한 걱정만은 아니다. 교육부가 수능을 미뤄 놓은 12월 3일은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해진다는 겨울의 한복판이요,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해 왔던 3차, 4차 유행이 예상되는 시기이다. 어찌 보면 수능 시험 자체가 지금의 형태로는 치러지기 힘들 수도 있다. 토플이나 토익처럼 문제 은행에서 출제되고 여러 장소에서 여러 번 응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선 그야말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학문의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자격 고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다. 오프라인 만남이 없는 온라인 교육은 한계가 명확하기에 그에 걸맞은 밀도나 농도를 논의하고 대안을 찾으면 된다. 오히려 코로나19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10대를 저당 잡혀 한날 한시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치르는 시험이 인생을 결정하는 이 시스템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면, 입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체계와 결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환상과 결별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시든 수시든 가진 자가 유리하다. 문제풀이식 지식학습의 총체인 수능은 실패를 견디고 문제풀이 능력 계발에 몰두할 수 있는 계층에게 유리하고, 수시 역시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 정보력을 가지고 학교의 자원을 탐색하여 그 자원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계층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며 교육으로 경쟁을 시켜서 자원을 분배하는 것 자체가 계급간 격차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제일 뿐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디지털 격차인가? 학습 권력의 이동인가?

온라인 교육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격차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한다. 입시를 정점으로 한 학교 교육의 내용을 통제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에서 이탈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것을 ‘문제’라고만 볼 수 있을까? 입시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오히려 온라인 개학을 그리워한다.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은 적어도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수업과의 접점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는 어떤 내용이 디지털로 제공되고 있고, 학생들이 무엇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 인간으로서 공교육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서로 함께 배우고 나눠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합의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시수를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만큼의 학습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식의 난이도와 필요성부터 조정해야 한다. 동일한 연령의 학생들이 지적인 자극과 이어지는 피드백을 통해 통찰에 이르는 교육 내용이 무엇일가의 고민도 필요한 것이다. 이와 함께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만 중요시되었던 ‘개별화 교육’의 의미도 다시 짚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는 모든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도달해야 할 교육의 수준이 있고, 그 수준에 도달한 학생과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가르치는 일제고사나 전국 모의고사와 같은 시험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일상적으로 병행되는 상황에서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체 교육과정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를 입시나 대학의 밥그릇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목표로 재정 의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즉 학습방법의 개별화와 더불어 학습목표와 단계의 개별화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 입안자-교과서-교사가 독점했던 배움의 권력이 진정으로 학생에게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여전히 무시되는 학생들의 목소리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면서 무엇보다 학습자의 주체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상황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실제 학생들은 개학에 대한 불안감을 ‘#개학반대’ 해시태그 총공세로 펼치기도 하였다.²⁾ 등교 개학 반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숫자가 상당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개학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았음에도 ‘학생들의 목소리’로 언론에 호명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모든 국민이 감염병을 피해 대피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고3만은 매일 등교가 강행되면서 고3도 원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지만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³⁾ 투표권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이슈에도 주체적인 목소리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임에도 고3은 매일 등교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을 때, 국회는 폐쇄되었고 전 국민에게는 집콕하라는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통씩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학교 컴퓨터 앞에서 학생생활기록부 작성과 수능 원서 접수를 위해 컴퓨터에 코를 쳐박고 있고,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다가 쓰다가를 반복하며 교실에 앉아 있다. 3학년 교무실에서는 ‘수능 원서 접수를 미루지 않으려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안 한다’는 농담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30분 수업으로 단축하고 급식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수업시간 단축은 편법이라며 오후에 20분짜리 온라인 수업을 올리라는 등,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편법을 많이 눈감는 거라는 등, 고교 블라인드 처리 때문에 학교 이름은 다 빼라고 했는데 영어 이니셜은 안 지워도 괜찮은 거냐는 등 여러 가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과연 청와대에 재택근무를 지시한 대통령과 전 국민 집콕을 명령한 국무총리와 질병관리청은 이렇게 복닥복닥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상상이나 하고 있는 걸까? 만약 학교에서 코로나19에 걸려 강제 재수할 지도 모른다는 학생들의 공포와 분노를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걸까? 학생들에게는 입시라는 역을 향해 달리는 열차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내릴 것인가, 위험한 열차를 탈 것인가의 선택지만 남아 있는 것이다.

2) 이은비(2020.5.25.). 학생들 SNS서 등교 개학 반대 총공...“의견 들어 달라”. YTN뉴스.
www.ytn.co.kr/_ln/0103_202005251510017395

3) 청와대 청원 "고3도 원격수업으로 바꿔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forums/215309>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오랜 삶을 살아야 할 주체는 학생들이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지시와 강제를 받는 존재이지 코로나 이후의 삶에 필요한 삶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 마스크를 빼고 이야기하면 벌점을 받고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감시와 지적을 당하는 존재인 것이다.

코로나19가 교육에 던진 질문은 첨단 기술로 만들어 내는 미래교육에 있지 않다. 그 질문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변하지 않는 교육에 대해 이전부터 계속 된 질문이 그 모습을 바꾼 것 뿐일지도. 

<특집>
코로나19가 교육에 던진 질문



코로나19와 신조어 광풍

박도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구성작가

코로나19와 비정상적인 말의 온도

2020년은 코로나19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 2000년대에서 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해는 2020년 올해뿐이라며 온갖 특별함으로 세상을 들뜨게 하던 때, 코로나19는 천 년에 한 번 찾아오는 숫자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고열과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듯 사회 곳곳 역시 감염병의 공포에 대한 신열을 앓는 듯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람들의 말이다. 천소영 수원대 교수는 2006년 국립국어원이 낸 '새 국어 생활'에 기고한 글에서 “된소리·거센소리가 현대인들의 감성 표현에 동원되어 그들의 정서와 영합된지는 오래다⁴⁾.”라고 지적했듯 언어는 사회적 정서를 반영하기 마련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역시 언어생활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올해 거의 처음 듣는 말들이 매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신조어 광풍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팬데믹(pandemic), 언택트(untact), 코로나블루(corona blue),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코로나케이션(coronacation)……. 한 번쯤은 어디선가 보았거나 말해봤을 법한 이 단어들은 대체로 만들어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신생 언어들이다. 심지어 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최근 가장 자주 접하는 단어인 언택트(untact)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조어로 ‘접촉하다, 대면하다’는 뜻의 콘택트(contact)에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 ‘Un’을 붙인 것이다. 아마 올해 최고의 유행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언택트’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가 매년 발간하는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맨 처음 소개되었다. 김난도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 연구원이 비대면 기술과 산업을 통칭해 ‘언택트’로 부르자고 제안했으며, 연구팀 전원이 이 용어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해” 채택했다고 한다.⁵⁾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이미 만들어진 단어였고 그 전부터 조금씩 사용되고 있다가 비대면이 필수인 상황과 맞물려 그야말로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된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언택트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은 날을 꿈기 힘들게 되었다. 언택트 시대, 언택트 교육, 언택트 서비스 등 이제 이 단어 없이는 코로나19에 대해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우리 생활 속 말의 온도까지도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있다.

4) 천소영, 「된소리 발음과 극단적 표현」, 『새 국어 생활』 제16권 제4호, 국립국어원 국어 생활 논단, 2006, 111면.

5) 조선일보, 「코로나로 뜬 단어 언택트(untact)가 이 사람 작품이었어?」, 2020. 4. 17.

무엇이든 줄여 드립니다

최근 신조어의 추세는 ‘줄임말’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신조어는 ‘급식체’였다. 학교 급식을 먹는 세대 즉, 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급식체는 SNS를 넘어 TV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널리 화제가 되었다. 특정 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말이라고는 하지만 방송에서조차 일상 언어처럼 사용되면서부터는 급식체를 모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문법에 맞지 않는다가거나 한글 파괴를 주도한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지만 말을 이해하지 못해 첨단과 유행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보단 급식체를 흉내라도 내 보는 것이 낫다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부끄럽게도 필자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한다). 앞서 언급한 급식체는 아예 모음이나 받침까지 떼어버리고 자음으로만 말해도 알아들어야 할 만큼, 그야말로 ‘줄임 만큼 줄이는’ 것이 대세였다. 코로나체 역시 줄임말이 대부분이다. 대면, 접촉이라는 말의 콘택트(contact)에서 맨 앞 철자 두 개를 빼고 un(부정), on(연결), in(내부) 등 필요한 접두사를 붙이면 언택트, 온택트, 인택트 등 필요한 모든 단어가 된다. 코로나케이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 생겨난 방학, 휴가라는 뜻의 코로나+베이케이션(corona+vacation)으로 만들어진 단어였지만 이제는 베이케이션(vacation) 대신 치료 행위를 뜻하는 메디케이션(medication)을 붙여 코로나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economy)’도 코로나와 관련된 줄임말 신조어로 만들어지는데 자주 활용된다.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를 모두 언급하려면 지면이 부족할 정도이니 신조어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이만 줄인다.

대중과 언론 사이 벽을 쌓는 신조어

언어는 계속 변화한다. 마치 생물처럼 탄생과 성장,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급식체의 반짝 유행이 시들해질 즈음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됐고, 그와 함께 등장한 ‘코로나체’ 역시 대부분의 신조어처럼 한껏 기세를 펼치고 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몇 개월 유행하다 잠잠해질 줄 알았던,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피해가 생기고 사라질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서서히 감염병의 생활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에 우리를 던져 놓았고, 다양한 매체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신조어를 접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과연 신조어를 처음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인터넷이 일상인 현대 사회에서 재미있고 새로운 단어 하나 퍼 나르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도대체 누가 이처럼 번뜩이는 재치와 탁월한 조합으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가 하는 것이다. ‘언택트’처럼 특정 집단에서 만들 수도 있고, ‘급식체’처럼 특정 세대가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역시 언론이다.

포털 사이트에 ‘코로나체’에 해당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결과물이 쏟아진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택트’를 검색해 보라. 하루에 수백 개의 게시물이 표시된다. 심지어는 모르는 단어를 일일이 검색해 보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글과도 마주치게 된다. 인터넷신문에 실린 한 칼럼을 예로 들어 본다.

미증유(未曾有)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우리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을 송두리째 흔들어 바꿔버린 대변혁을 재촉하고 있다. 접촉에 의한 전통적 대면의 ‘콘택트(contact)’는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버리고, 단절과 고립의 새로운 비대면의 ‘언택트(untact)’가 일상이 되어, 단순히 사회·문화 현상에만 머물지 않고 온라인(On)에 연결(-tact)을 더한 ‘온택트(ontact)’ 비즈니스 트렌드로 진화하고 있다.

‘랜선 트렌드’는 온라인 플랫폼과 AI, 스마트 디바이스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이 전망되는 가운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확장현실(XR)과 인터넷을 통한 영상 서비스 산업(OTT)을 필두로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략-

뿐만 아니라 ‘홈코노미(homeconomy)’ 시장의 부상과 ‘홈택트 라이프(Hometact Life)’ 및 ‘긱 경제(gig economy)’의 프리랜서(Freelancer), ‘전문가 서비스(professional services)’, ‘썸택(Thumbtack)’, 배달앱서비스, N잡러가 고용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초유연 근로제(ultra flexible work)’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9월 24일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슬라빅 디미트로비치(Slavik Dimitrovich) 총괄은 ‘스마트클라우드쇼 2020’에서 ‘파괴가 뉴 노멀’이라고 했다.

-중략-

교육을 ‘에듀테크(edu++tech)’를 통한 이러닝(e-learning)으로 전환해야 한다.

-후략-

***뜻풀이**

팬데믹(pandemic):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

언택트(untact): ‘un+contact’의 줄임말, 비대면.

온택트(ontact): ‘on+contact’의 줄임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의 통칭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달라진 시대

뉴 노멀(new normal):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의 시대

홈코노미(homeconomy): 주로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의 소비를 겨냥한 경제

홈택트 라이프(Hometact Life): 바깥 활동 대신 집안에서 여가를 보내는 생활

긱 경제(gig economy): 기업에서 정규직을 고용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고용하여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 추세

썸택(Thumbtack): 엄지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뜻으로 스마트폰으로 소비활동을
하는 세대를 일컫는 말

에듀테크(edu+tech):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빅데이터, 인공지
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

(출처: 비욘드포스트 10월 1일자 칼럼)⁶⁾

읽다 보면 ‘이렇게 많은 외래어나 신조어를 사용해야만 이 글의 내용이 완성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그나마 괄호로 표시된 신조어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칼럼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진하게 표시한 단어 말고도 외래어와 신조어가 넘치는 이 칼럼은 한 기관장이 쓴 것이었지만, 기자가 쓰는 많은 기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언어가 이 사회의 현실과 현대인들의 심리를 반영하며 생성과 소멸을 이어 가는 만큼 현재 쓰이고 있는 코로나체 역시 더 많은 이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어떨까? ‘○택트’ 대신 ‘비대면을 통한 ○○’, ‘코로나 블루’ 대신 ‘코로나 우울감(증)’, ‘코로나케이션’ 대신 ‘코로나 방학(휴가)’, ‘포스트 코로나’ 대신 ‘코로나 이후의 시대’, ‘에듀테크’ 대신 ‘기술과 결합한 교육’ 등 더 많은 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은 얼마든지 있다.

6) 박근종(2020.10.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대응전략. 비욘드포스트.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01001093246587046a9e4dd7f_30

그렇다면 언론은 왜 곧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와 때로는 출처조차 불분명한 신조어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중과의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한 환상(여론) 조장’이라 말하고 싶다. 코로나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조어는 외국어, 주로 영어다.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외국어인 영어를 사용해 적절한 친근함을 주는 것으로 ‘이 단어를 접하고 있는 당신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 동시에 ‘당신은 이 단어의 뜻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라고 되물으며 매체와의 거리를 둔다. 대중 앞에 선 언론의 장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언어에도 기득권층이 있다. 풍부한 언어를 사용할수록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짐은 당연한 일, 요즘은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운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두고 ‘세대 차이’라 불러야 하는 때다. 인터넷을 통해 더 큰 전파력을 가지는 언론은 언어의 최대 기득권층이다. 이처럼 언어의 세대 차이를 줄일 수도, 폭발적으로 늘릴 수도 있는 것이 언론의 힘이다.

감염시대, 언어유감

신조어는 응용 능력이 뛰어나 또 다른 신조어를 낳는다. 처음 하나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 그렇지, 하나가 만들어진 뒤에는 수많은 신조어가 탄생한다. 물론 그중 가장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는 몇 개만 살아남게 되지만 말이다.

코로나체 역시 그렇다. ‘코로나체’라는 말조차 필자가 만들어 낸 신조어가 될 지도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시기에 만들어진 많은 단어 중 일부만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널리 사용되고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등재되는 날도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신조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고, 그들이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말 그대로 ‘짧고 굵게’ 회자되다 사라지는 대부분의 신조어,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나는 왜 이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까? 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가?’ 하는 심리적 부담감은 사람들 사이에 언어적 균열을 만든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언어적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 보인다. 언어의 기득권층이 되어 말의 권력을 누리느냐, 더 폭넓은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냐에 관한 것, 언론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여러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더 다양한 이들이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말을 만들 것인지, 외래어를 넘어 외계어를 사용하며 언어의 기득권을 누리는 현재의 모습을 따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다경**

교육에 던져진 질문들

경남교육정책매거진

다감





다감

<기획>

인권이 교육에 던진 질문

자신을 탐색하는 인권교육으로의 전환 _26

이희진(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삶을 위한 교육,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_38

전명훈(서울시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

인권으로서 '놀이 권리' _50

고영남(인제대학교 교수)

인권, 보호를 넘어 사회권으로 _58

공 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자신을 탐색하는 인권교육으로의 전환

이희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지 <인권이론과 실천> 16호에 실린
'인권교육의 대안적 접근-게임에서 탐색으로'를 기초로 수정된 글입니다.

1. 들어가며

인권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언어이기도 하다. 굉장히 드물게도 진전만을 거듭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세계전쟁이 국가와 평화라는 말을 후퇴시키고 왜곡시킨 것과는 다르게 그리고 한국전쟁과 분단 상황이 국가안보라는 말을 오염시키고 뒤틀어 놓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권이라는 언어는 참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 인권상황이 후퇴할지언정 인권이라고 인정된 것이 추후에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고 왜곡되거나 부정당한 예는 극히 드물다.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지각하고 나면 결코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인권감수성이라 부르는 이 감각은 사막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바다를 한번 보고 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한번 맞고 나면 그 사람의 세계 자체가 달라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누가 가르쳐주고 설명해 줄 필요 없이 보고 냄새맡고 부딪히고 느끼는 그 순간 인간 내면에 이미 존재하던 것처럼 인권이라는 감각은 불거져나온다. 그래서 인권은 실체성을 가진 감각이다.

인권교육은 한층 더 나아가 있다. 교육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받아들여진 역사도 길지

않지만 인권교육은 이미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 여겨지고 있다. 1948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국가의 국민들과 나라들이 성취해야 할 공통적인 인권 기준을 규정하면서 인권교육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유네스코를 통하여 더욱 활발히 전 세계에서 일반화되고 있으며(박성혁, 2001: 106), 한국 사회에서도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과 민간영역에서의 교육활동 등 전 영역에서 인권교육은 상당 부분 제도화되어 있다. 우리에게 인권교육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거나 급진적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권교육을 둘러싼 움직임들은 상대적으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무했던 영역이기에 인권교육 자체를 진입시키는 것 자체가 과제이기도 했다. 또한 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정당한 근거로서 필요성이 강조되고 인권교육을 통해 특정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꾀할 수 있다는 접근 역시 많았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권교육과 다문화인권교육 등이 필요하고 성폭력과 성편견을 예방하기 위해 성평등교육 및 성인지교육이 모색되었다. 그 결과 초등학교 범교과교육

과정⁷⁾ 요소는 17개에 달했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된 내용까지 포함하면 과연 이 수많은 요소들이 다 교육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강사를 학교에 불러서 인권교육을 받아봤자 허황한 소리만 한다는 평가도 흔하다. 이제 양적 팽창보다 실제적 의미의 구현이 과제로 떠오른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금의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하고 보다 구체적 과제로서 인권교육의 계몽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탐색적 인권교육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에서 인권교육은 1990년대 초반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등 몇몇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가적으로 인권

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인권교육은 민간영역, 특히 시민사회운동 영역을 중심으로 그 역량이 축적되어 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지 15년이 지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인권교육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초기의 인권교육은 민간영역이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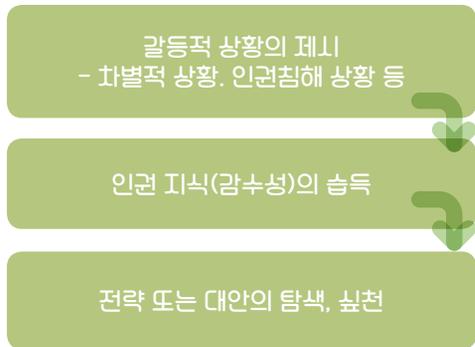
이후 인권교육은 점차 제도화되었는데 영역이 분화되었다. 이에 따라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도구들도 개발되기 시작했다. 평가라는 특성상 환류(feedback) 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평가 도구는 인권교육의 목표 및 내용, 방법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가. 인권교육의 영역과 내용

최근의 인권교육은 학교인권교육 및 공무원 인권교육의 수요에 맞추어져 분야별 인권교육-인권전반, 장애, 다문화, 성, 노동, 인종 등으로 나누어진다. 시민사회운동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영역을 나누기도 하는데 인권강사 양성과정,

7) 원래의 의미로는 토론교육 등 하나의 과목으로 수렴되지 않아 여러 교과 혹은 교과 소속 없이 교육되는 내용들을 지칭하는 용어나 실제 공교육 현장에서는 정규교과와 연계하여 교육하도록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을 소화할 수 있는 계획과 교육 운영을 부르는 말로 쓰이고 있다. 공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은 사회나 도덕과 교과들과 연계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법교과 교육에서 대부분 소화하고 있으며,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도 학교단위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2014년 대구광역시외의 경우 통일안보교육(1회), 행복인식전환교육(34시간),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10회), 재난대비 안전교육(6시간), 교통안전교육(10시간),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학교폭력 예방교육(4시간), 성교육(15시간), 보건교육(17시간), 흡연 예방 및 금연지도(2시간), 심폐소생술 실습교육(2시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2시간), 독도교육(10시간), 장애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2회), 정보통신윤리교육(15시간), ICT소양교육(17시간), 지속가능 발전교육(5시간) 등이었다. 2015년에는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의 도입으로 시간이 더 확대되고 더 강조되고 있다.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특정 영역에 대한 워크숍 등의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 중 인권강사 양성 과정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분야별 인권교육의 영역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도 인권교육의 영역을 분야별로 서술하고자 한다. 영역별 인권교육은 내용은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틀을 가지고 전개된다.



인권교육이 1990년 이래 한국사회에서 양적으로 확대되는 데에는 차별, 폭력, 인권침해 등의 인권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이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 인권교육이 근본적 방법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권교육의 효용적 가치가 큰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인권교육의 구조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적 감수성 또는 지식 등을 제안하고 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과정으로 구현되었다. 장애인권교육을 예로 들자면, ‘우리 사회에 장애인 인구가 15%가 넘는다는데 왜

우리 주변에서는 장애인을 이렇게 볼 수 없는 걸까요?’라는 질문(갈등적 상황의 제시)으로 교육을 시작해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인권 지식의 습득)을 한 후 모두에게 차별적이지 않은 공간 디자인하기(대안의 탐색 및 실천) 등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러한 교육은 실생활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감수성 향상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고 실생활에 인권교육의 효과가 바로 적용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반면에 인권교육이 기본적으로 계몽적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계몽적 인권교육은 늘 인권교육이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면서도 간접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여겨지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나. 인권교육 프로그램 평가 도구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척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이며 지금까지 대부분 추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성소수자의 성인식·성태도·성행동에 관한 연구(신동열, 2010), 경찰공무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경찰 인권교육의 개선 방안(남재성, 2014), 예비교사를 위한 도덕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임연기·문미희, 2007), 특수아동의 학교폭력 실태 및 해결방안과

법·인권교육의 방향(이현수·김다현, 2012),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의 인권민감성에 관한 연구(남연희 외, 2012) 등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 인식과 태도, 감수성의 향상을 척도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평가 도구는 최용성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최용성(2014)은 대안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 도구를 적용하고 있다.

- 인권 감수성의 변화
- 인권 판단력의 변화
- 인권 동기화의 변화
- 인권 품성화의 변화

최용성의 연구에서도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감수성, 판단력, 동기화, 품성화의 평가 준거를 가지면서 보다 잘 느끼고 보다 잘 판단하는 인권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인권교육의 방향을 두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이는 앞서 분석한 인권교육의 영역과 내용이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품성(도덕성)과 판단력(인지능력)이 강조되는 인권교육은 내면적 인권의식의 증진보다는 효용적이고 외부적 효과가 나타나는 영역들에 집중된다는 한계가 있다. 타율기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육대상 특히 학생에게 과도한 학습노동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의 인권 침해적 학교 상황과 만났을 때,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책임을 면하고 일시적 처방과 전시행정을 중요시하는 관료제 사회와 만났을 때 인권교육은 이루어야 할 성적(성취 기준)이나 준수해야 할 직무지침과 유사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 역시 개인의 도덕과 판단력을 중심으로 학습되는 인권교육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인권교육은 영역과 방향에 있어 교육대상의 능력을 함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교육의 학습적 특성은 인권교육을 계몽적 양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I. 제안: 자신을 찾아가는 인권교육

가. 탐색을 지원하는 인권교육

이 글의 처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이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 인권을 주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인간 본연의 그리고 본질적인 권리라는 의미이다. 모든 사람이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인권을 모르고 있으니 알려주고 그들을 계몽하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자신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물리적 기회들을 제공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계몽적 인권교육은 교육 대상에게 스스로의 내면, 스스로의 인권에 대하여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뉴욕 시 보건정신위생청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HIV/AIDS 교육과정을 통해 계몽적 인권교육의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 뉴욕 시는 HIV/AIDS 교육을 K-1에서 K-12, 한국어로 말하자면 유아 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년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연 5~6회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과정은 교사용 가이드에서부터 학부모 통신문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체계와 전문성이 보장된다.

What Does It Mean to Be Healthy?

Performance Objective
Students will be able to describe what it means to be healthy and feel good.

Motivation
Use a large picture depicting children of varied racial and ethnic groups at play. Then ask,

- Who wants to tell us about this picture?
- How do you think these children feel?
- Let's list the words that tell us about these children.
- Write the words on board/newsprint.

From these words, develop a definition of "healthy," e.g., "Healthy means... feeling great, eating nutritious foods, feeling energetic," etc.

Procedure/Development

- Discuss the picture with the class.
- Ask, "What makes you healthy?" In responding to children's answers, affirm both their uniqueness and the things they may have in common with others.

Assessment
Tell children, "Draw a picture of yourself doing something that helps you feel and be healthy." Have children share their pictures and describe why this makes them healthy.

KINDERGARTEN
Lesson
1

NEW YORK STATE
LEARNING STANDARDS
1

SKILLS
Self-Management

MATERIALS
Crayons
Drawing Paper
Markers
Board/Newsprint
Picture of Children at Play

VOCABULARY
Energetic
Healthy
Nutritious

<p>KINDERGARTEN Lesson 2</p> <p>NEW YORK STATE LEARNING STANDARDS 1</p> <p>SKILLS Communication Decision Making Relationship Management</p> <p>MATERIALS Crayons Drawing Paper</p> <p>VOCABULARY Clinic Doctor Drugstore Hospital Nurse Pharmacist Sick</p>	<h2>What Does It Mean to Be Sick?</h2> <p>Performance Objective Students will b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being sick and healthy.</p> <p>Motiv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k, “Can you tell us about a time when you didn’t feel well?” • Ask, “How do you feel when you are sick?” <p>Procedure/Develop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k for volunteers to role-play a visit to the clinic or doctor’s off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les: child, mother, father, guardian or other responsible adult, doctor, nurse, pharmacist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Teacher Note: If children habitually refer to medical caregivers as “he,” point out that women as well as men are medical caregivers.</p> <p>Teacher Note: Teachers should be sensitive to the fact that students come from a variety of economic,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s. Not all students will have a private pediatrician and may utilize clinics and emergency rooms as a source of primary care, while other students may utilize alternative healing practices.</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cilitate the flow of the story through these scen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Onset of symptoms; child tells parent(s) about symptoms. (b) Child and parent(s) visit clinic or doctor’s office and describe symptoms. (c) Clinician examines child. (d) Child and parent(s) follow clinician’s advice, e.g., they go to a drugstore to fill a prescription for medication, and/or child
--	--

[뉴욕 11 HIV/AIDS 유아 교육과정 1과, 2과 가이드]

특히 주목할 점은 교육과정의 처음이다. ‘여러분, 에이즈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혹은 ‘에이즈 환자들은 이런 차별을 받고 있어요.’가 아니다. 가장 처음 교육 대상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나요?’ 이다. 잠자고 먹고 씻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HIV/AIDS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다. 에이즈가 무엇이고 질병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등 판단력과 인권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내가 건강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탐색해봄으로써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건강권을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많은 감염병이 예고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건강권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자기 자신의 건강한 상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교육은 교육 참여자들이 주체가 되는 인권교육의

방향일 뿐더러, 교육 참여자들로 하여금 질병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현상을 자신의 문제, 내 삶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교육 자체에서 HIV/AIDS 감염인을 대상화하지 않고 당사자가 교육대상 중 있어도 배제 없는 교육활동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인권적이다.

기존의 인권교육을 계몽적 인권교육이라 칭한다면, 교육에 있어 교육 참여자의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접근을 ‘탐색적 인권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에 대한 충실한 고민이 없는 인권교육은 결국 타율적 규범을 수용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나’에 대한 탐색 없이 누군가-인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인권을 고민하는 것은 일정 부분의 대상화, 타자화를 동반하게 되고 이는 곧 인권교육이 인권의 본질을 왜곡하게 되는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육 참여자의 탐색을 지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전제를 통해 인권교육을 새롭게 접근해본다면, 장애인권교육은 장애차별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몸과 마음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제공되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문화는, 나의 국가는, 나의 애국심은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다짐을 함께 하기 전에 나의 젠더와 나의 성적 지향은 무엇인지 먼저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인권교육에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교육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다양성 인권교육>

1) 문화란 본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익히게 된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록으로 적어볼까요?

- 여름엔 반팔 옷을 입는다.
- 머리를 매일 감는다.
- 밥과 여러 가지 반찬을 그릇에 나누어 담아 먹는다 등

2) 주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 하더라도 내가 가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내게는 없는 문화’를 찾아 적어봅시다.

-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는데 나는 포크를 더 자주 사용한다.
- 나는 대중가요를 잘 듣지 않는다.
- 나는 왼손잡이라서 가위보다는 칼을 자주 쓴다 등

3) 다음은 한국의 상징들입니다. 1부터 5까지 나의 감정을 표현하여 봅시다.

무궁화



태극기



애국가



김치



<장애인권 교육>

- 1) 내 몸의 특징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장점으로 인정해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림으로 나타내어 주세요.
- 2) 내 몸의 특징 중에서 단점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 3) 2번에 적은 것들이 실제 자신의 생활에서 불편함으로 작용하나요?

나. '나'의 다양성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인권교육

교육대상의 탐색을 지원하는 인권교육은 참여자가 자신의 문제로 인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말고도 인권교육이 교육 참여자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긍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 인권교육 자체가 참여자에게 임파워링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앞서 인권교육의 평가도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의 인권교육은 그 효용과 가치가 나보다는 남을

위한 것에 대부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때문에 인권교육이 도덕이나 개인의 착한 품성과 곧잘 연결된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나도 행복하고 평화롭다’는 전제와 상호의존성에 근거한 인권교육이다. 이는 인권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인권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지만 참여자를 인권의 주체로, 인권을 보장하고 향유하는 행위자로 성장시키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인권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착함’과 반대편에 서 있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거부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 사회적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숨겨져 왔던 것을 드러내고 존중하라 주장하는 것, 그것이 인권이었다.

사회는 소수자를 부정하고 삭제한다. 이는 소수자의 존재 자체에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가장 잔혹한 폭력이자 누구나 스스로 각자 나름의 방어기제와 편히 살고 싶은 욕구로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폭력이기도 하다. 자신이 여성인데 여성을 비하하고 자신이 장애인인데 장애를 부정하는, 자신이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뚱뚱한 몸을 경멸하는 식이다. 사회가 소수자에게 행하는 폭력을 본인 스스로 자신에게 행하여 나의 본질을 삭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의 일부를 부정한다면, 온전히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인권교육은 교육 참여자가 스스로의 약점과 소수자성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한 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스스로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자기 스스로가 약점으로 여기는 부분으로부터 해방되어야 사회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소수자성을 존중할 수 있다. 단순히 차별하지 않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 최근 장애를 개성과 아름다움으로 접근하는 장애학의 시도에서 볼 수 있듯, 각각의 개성으로 그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비로서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고 평등한 태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착함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과 더 자유로워짐으로서 발산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교육의 과정이 교육 참여자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하고도 사회에서 삭제되지 않고 밀려나지 않는 경험을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의 장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자신의 소수자성을 마주하고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이다. 교육 참여자가 보다 더 안전한 공간에서 그 탐색 과정을 경험하고 교육을 준비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기 내부로의 탐색을 지지받는 경험. 그래서 각자가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교육에서 목표로 이야기되어 왔던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인 것이다. 이것은 계몽적 인권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자신의 소수자성과 기득권에 대한 질문들과 마주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참여자의 탐색적 과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인권의 개념을 설명할 때 흔히 ‘천부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한다. 하늘이 주어지는 자연권이라는 개념은 인권이 본능처럼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인권 역시 기능처럼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각자의 삶의 역사를 포괄하는 ‘성취-역량으로서의 인권’ 개념도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교육은 감각을 보다 섬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을 세련화하는 과정이지 수학적 원리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처럼 기능을 습득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의 인권교육처럼 학교인권교육과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이 인권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인권교육의 형식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의 형태를 가지고 교육 대상을 계몽하고자 하는 인권교육은 참여자들을 대상화하고 오히려 취약 집단을 타자화하는 등 인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인권교육은 무엇보다 교육 참여자 스스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이고 권리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것으로 획득되지 않는다. 자신의 존엄과 타인의 권리를 무엇이 억압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다양한 굴레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낼 수 있는 깨달음의 순간을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인권교육은 교육참여자가 자신의 굴레 즉 자신의 소수자성을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탐색적 인권교육이다.

보다 나아가, 탐색적 인권교육이 한국사회에서 오염된 ‘교육’이라는 언어를 회복하는 것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본다. 탐색적 인권교육은 판단력이나 감수성 등 능력의 함양으로 평가되기보다 교육 참여자가 얼마나 자신의 인권에 대하여 스스로 인식해나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이다.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행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 참여자가 행하는 탐색을 지원하는 안내자가 있는 교육이다. 이러한 형태의 인권교육이 특히 학교인권교육에서 행해질 때, UN인권위의 연이은 권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학교인권상황을 환기할 수 있고 보다 평등한 교육이 행해질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 역시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참고문헌

- 박성혁(2001), 초등 사회과 인권교육의 발달과 원리에 관한 연구, 초등사회과교육논총, pp. 105-124.
- 임일렬 · 유병열 · 안병자(2006), 초등 도덕과에서 생명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 내용과 내러티브 접근의 지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16(1), pp. 1-33.
- 조태원(2010), 제도권 인권교육 현황분석을 통한 학교인권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교육연구17(3), pp. 91-108.
- 최용성(2014),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대안적 개발·적용·검증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35, pp. 175-223.

삶은 위한 교육,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전명훈

서울시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



I. 서론

노동교육은 젊은 세대가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이다.

또한 도덕교육과 지식교육, 예술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노동이 한 개인의 도덕과 지적 자질 형성에 기반이 되는 노동교육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임무는 노동이 개인의 정신적 삶,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에 대한 열정이 청소년기와 청년기 초반에 큰 관심사로 자리 잡도록 돕는 것이다.

- 앨런 코커릴(2019), 「바실리 수호믈린스키,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빛나야 한다」 중에서

이번 정부에 들어서 평화교육, 성평등교육, 생태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의 여러 가지 교육영역들이 학교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노동인권교육 역시 그중 하나다. 교육이 사회의 주요한 모습을 반영하고 또한 사회 재생산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면 현 사회 시스템에서 주요한 영역인 노동, 그리고 주요한 행위 주체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노동과 교육의 연계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사회에서 부족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인권교육의 개념과 교육원칙 그리고 내용 요소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II. 노동인권교육의 역사

1. 민간으로부터의 시작된 노동인권교육

2000년대 초반 결성된 민간단체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⁸⁾를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이슈화가 이루어졌다. 당시 일부 교원들이 실업계고(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느꼈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노동

8) 2004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cafe.daum.net/nodongzzang)가 결성되었다.

인권교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일하는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각 지역에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⁹⁾가 순차적으로 결성되었고 민간 중심의 노동인권교육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어 2014년 전후,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¹⁰⁾에서는 학생인권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노동인권교육이 받아들여졌다. 교육청과 민간의 협력도 구체화되어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경부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펼쳐 나갔다. 이 때의 노동인권교육은 대개 민간단체의 강사단을 학교로 파견하고 교육청이나 개별학교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였다. 교육시간 역시 외부 강사 중심의 교육이다 보니 주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 광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대상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중심이었다. 반면, 교원 대상 노동인권교육은 직업계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현장실습 관련 교육 외에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2. 노동인권교육의 현재

가.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

이번 정부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50-1-4.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교육부 담당) 및 63번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고용노동부 담당) 과제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교육감 2기 공약사항으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운영’이 포함되었으며,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시·도 교육감의 공약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학교 노동인권교육에서 중앙 정부 및 시·도 교육청의 정책적 근거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9) 2020. 9월 현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은 광주, 대구, 부산, 부천, 서울, 인천, 전남, 충남, 충북, 전북 등이다.

10) 경기도교육청(2010), 서울시교육청(2011), 광주시교육청(2011), 전라북도교육청(2013)에 이어 최근 충남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됨(2020).

나.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

노동인권교육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 시도도 19대 국회부터 계속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강병원 의원등 11인, 2020.6.19.)이 발의되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의 제2조 제1호에서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사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서, 노동인권 옹호와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노동인권교육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 노동인권교육과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제외한 노동인권교육을 사회 노동인권교육으로 구분하며,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별도 법안 제8조¹¹⁾에서 규정하고 있다.

11)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8조(학교 노동인권교육)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도 조례를 통해 이러한 법적 근거를 자체적으로 마련해가고 있다. 2020년 9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총 11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지역	조례명	시행일	담당부서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대전광역시포례 제4492호, 2015.8.14., 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경기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경기도포례 제6321호, 2019.8.6., 전부개정]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전라남도포례 제4449호, 2017.9.28., 일부개정]	전라남도교육청 (인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포례 제6798호, 2018.1.4.,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주시민생활교육과)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포례 제5827호, 2018. 11. 14., 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광주광역시포례 제5228호, 2019. 6. 1.,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주시민교육과)
강원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도포례제4421호, 2019. 7. 5., 제정]	강원도교육청 (인주시민교육과)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충청북도포례 제4287호, 2019. 7. 12.,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세종특별시 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세종특별자치시포례제1332호, 2019. 9. 30., 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주시민교육과)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주특별자치도포례제2410호, 2019. 11. 20.,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인천광역시포례 제6415호, 2020. 7. 13.,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주시민교육과)

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시·도 교육청

각 조례에서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제정된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들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관련 정책사업의 근거가 되며 학교 현장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II.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교육의 이해

1. 노동인권의 개념 및 범위

가. 노동인권의 개념

노동인권은 인권의 한 영역이면서 노동으로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인권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며 누구나 방해받지 않고 노동의 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가 노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13: 21). 1948년 유엔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할 권리, 자유로운 직업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환경,

적정한 임금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66년 유엔에서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관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¹²⁾에서도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한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노동인권 관련 조항들이 존재한다. 「헌법」 제32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 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와 ‘노동삼권’을 통틀어서 헌법상 ‘노동권’ 조항들이라 칭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인권의 내용을 헌법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인권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은 아직 없다. 현재는

12)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정부 조례 차원에서 법적·행정적 정의를 하고 있을 뿐이다. 조례 수준에서의 노동인권의 법적 개념을 살펴보면,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노동인권의 범위

노동인권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협정의 노동인권’과 ‘광의의 노동인권’으로 분류한다. ‘협정의 노동인권’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 보호받고, 계약 체결 후 제반 노동(근로)조건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다. ‘광의의 노동인권’은 비단 개별 사용자와의 관계 종속성에 귀속되는 노동자의 권리만 아니라, 노동행위가 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일·노동이 유지되어야 할 조건, 노동력의 재생산과 이를 위한 훈련(교육·학습권), 그리고 집단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 및 사회정책에 참여하고,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서울시교육청, 2018: 29).

2. 노동인권교육의 개념과 내용

가. 노동인권교육의 개념

노동인권교육(education on human rights related labor)은 일반적으로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은 영어나 서구어로는 검색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개념이다. 대개 서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노동교육’으로 일찍이 노동(자)권리 중심의 교육으로 그 의미가 정립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동교육이라거나 혹은 인권교육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교육에 대해 이해하는 내용과 이해방식이 주체별로 다르게 형성되어왔기 때문에 개념의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 조례 역시 노동인권교육의 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을 ‘노동인권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제정된 조례 수준의 법적 정의를 종합해 보면, ‘노동인권교육’은 단순히 노동법적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서 ‘노동에 대한 가치, 태도, 감수성 등을 키워 학교 및 사회,

그리고 노동을 하는 일터에서 노동과 관련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뜻한다.

나. 노동인권교육의 내용

노동인권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 교육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직업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이다.

'직업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은 '협회의 노동인권'에 기초하여 진로·직업의 선택에서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며, 직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법적 지식전달 중심의 권리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¹³⁾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은 '광의의 노동인권'에 기초한 노동인권교육인데, 올바른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존중, 노동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시장경제 하에서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시민성을 체득하고,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의 가치와 시민성에 대한 교육이다¹⁴⁾.

노동이 이루어지는 일터는 일차적으로 노동계약에 기초한 노동력의 제공과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동시에, 다른 차원에서는 시민들이 하루생활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며 밀도 높은 조직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다. 이 조직생활은 개인의 경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곳이다. 이와 같은 조직생활을 민주화하거나 그 조직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참여형 시민으로 성숙해 나가는 일은 국가수준의 참여 장치에 더없이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바로 정치체제의 민주화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서울시교육청, 2018: 50).

3. 노동인권교육의 원칙

「통일교육지원법」¹⁵⁾, 「경제교육지원법」¹⁶⁾상에서는 교육원칙은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혹은 '특정

13)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에 대하여,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적 역량에 대한 교육이고 민주적인 가치(관) 및 태도에 대한 교육"이라고 한다(장은주,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2017년).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019. 11.).

14)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①협회의 노동인권, ②노동문화, ③일과 직업, ④노동자와 노동의 비전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②노동문화~④노동자와 노동의 비전까지의 교육을 '광의의 노동인권교육'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2018.)

15)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6) (경제교육지원법)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인권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한다면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원칙들은 형식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추상적 혹은 기계적인 중립성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노동인권교육 혹은 노동교육의 원칙에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최근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보이텔스바흐 원칙¹⁷⁾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독일에서도 노동교육은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¹⁸⁾

한편 노동인권교육의 원칙의 전제조건은 헌법상의 노동권, 노동3권에 대한 확인이다.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은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 국민의 노동권, 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있으며 노동인권교육은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헌법적 가치의 확인 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원칙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또다른 부분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조약 및 ILO 협약 등이다. 국제노동기준은 노동인권교육 원칙에 있어서 주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1919년 채택된 ILO 헌장에서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의 기초 위에 서만 가능하다'라는 원칙과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에서 채택된 ①노동에 대한 존중, ②집단적 자유, ③연대, ④사회적 민주주의 원칙 역시 노동인권교육에서의 기본원칙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¹⁹⁾ 마지막으로 노동인권교육은 시민교육으로서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

17) ① 주화-교화 금지원칙 : 강압적인 교화와 주입식 교육금지 및 학생 자율적 판단 중시, ② 논쟁성 재현 원칙 :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함, ③ 이해 상관성 원칙 :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관심 상황을 분석할 능력, 그리고 그의 관심영역에 놓인 현존하는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함

18) 또 노사 어느 한쪽의 시선을 강요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르친다.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외눈박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그는 "노동조합과 고용주협회뿐 아니라 정당, 정부까지 자신들의 의견이 담긴 자료를 학교에 제공한다"며 "우리는 학생들에게 주의 깊게 평가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항상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가르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학교에서 경제와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닐스 파이글 교사는 "교사들은 독일 정부의 교육 지침을 준수하면서 여러 기관이 제공한 노동 교육 자료들을 신중하게 선택해 교육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이런 교육 체계는 1976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의해 구성됐다. 바람직한 의견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특정 생각을 주입하지 않고 학문이나 현실 정치에서 논쟁적인 사안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인 면을 모두 가르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 서울신문, 「獨 15세에 기업 인턴십, 16세엔 노동수업... '노사협력인권' 배운다」, 2019.4.29.

19)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1944, 5월)
총회는 국제노동기구가 근거하는 있는 기본 원칙들, 특히 다음 원칙들을 다시 천명한다.
a)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b)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c)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d) 결핍과의 투쟁은 각국에서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선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

교육의 원칙에 대해서는 사회 각 주체 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노동교육의 지속성, 확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²⁰⁾

IV. 교육과정으로서의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방향

1.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 정립

노동인권교육은 단순히 노동법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 그리고 노동인권 감수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며, 그 방향은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격에 부합하는 시민교육의 하위 요소라 할 수 있다.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첫째, 고등학생들에게 성인기에 요구되는 사회생활의 필수 지식과 기능, 특히 진로 탐색과 직업선택에 요구되는 주요 내용과 기능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다. 둘째, 노동에 관련된 인권 존중

·관용·타협의 정신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시민적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인권 관련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려는 가치 및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민주 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해내가는 배경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을 전 학교급으로 확장하고,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혹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현 교육과정 안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현재의 학교 노동인권교육은 대부분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밀접하지 않고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창체 시간)을 활용한 외부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과정 안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시간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¹⁾. 교육과정상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일부 사회과(통합사회 등) 혹은 성공적인 직업생활(특성화고) 등 교과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관련 내용이 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통합적 관점에서의 국가교육

20) 교육의 원칙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참고할 만하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21) 노동교육 시간을 추산하기 위해 우선 전체 교육과정 성취기준(교사가 수업 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 중 노동이 포함된 단원의 비율을 뽑았다. 0.03%였다. 이 비율을 초·중·고교 총수업시수(1만 418시간)에 곱하니 10년간 약 3.3시간만 노동에 대해 가르친다는 계산이 나왔다. 고2·3학년 때는 사회가 선택과목이어서 분석 대상에서 뺐다. 모든 교과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토대로 집필된다. -서울신문, '1만 시간 중 단 3.3시간... 막노동·청소부만 보이는 부실 노동교육', 2019.4.26.

과정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교육부의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을 보면 범교과학습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중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범교과학습 주제를 살펴보면 민주시민교육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교육’을, 인권교육에서는 ‘노동인권 존중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²²⁾. 결국 노동인권교육이 인권 교육의 한 영역이고, 또한 인권교육이 광의의 민주시민교육에서의 시민권 및 시민성 함양에 관한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인권 교육은 또한 전체 민주시민교육 체계와 교육 과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제교육에서도 노동은 자본과 더불어 주요한 요소이며, 노동자는 이러한 경제사회 영역에서의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진로교육에서도 직업의 세계, 직업의 선택, 진로의 계획 못지않게 ‘괜찮은 일자리’

가 어떠한 일인지 안내하고 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몹시 필요하다.

따라서 차기 국가 교육과정 개정시 노동인권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경제 교육 및 진로교육 등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노동인권교육의 교육과정 재구성

위에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광주, 전남, 전북, 경기, 서울 등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먼저 시작하여 체계화하였고, 교육부를 비롯하여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신설을 통해 노동인권교육 관련 사업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 시·도 교육청 별로 노동인권교육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은 정책적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학교(혹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부처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부처들이 협력하여 통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일선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 제정 등 관련 근거도 필요할 것이다²³⁾.

22) “민주시민교육은 건전한 사회를 위해 청렴·반부패 문화를 형성하고, 헌법의 정신 및 법질서를 존중하도록 하며, 생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권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양성평등, 노동인권 존중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각종 폭력을 예방하도록 한다” - 교육부(2015),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해설

23) 현재 발의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법안에서는 학교노동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 노동인권교육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법률안’으로 단순화하여 교육부를 주무부처로, 고용노동부를 협조부처로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

교육과정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교육부는 현재 '안정적·체계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을 세부 추진과제로 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교육부, 2019.11), 노동인권교육도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틀 안에서 교육과정 안에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V. 결론

노동인권교육은 현재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질적인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민간에서 먼저 시작하였지만 제도화과정에 있는 학교노동인권교육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 대상은 특성화고등 직업계고 학생들 중심에서 전체 학생 대상으로, ▲교육내용은 직업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노동인권교육으로, ▲교육방식은 기존 창체 시간을 활용한 교육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으로, ▲교육주체는 외부 민간강사 중심에서 학교 현장의 교원들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 단위에서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활용

하거나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도 가능하며 필요하겠지만, 노동인권교육이라는 사회적 교육의 무게와 필요성을 교사 개인들의 선택과 부담으로만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 수준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명확히 연계한 후 이를 근거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질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아쉬운 부분은 경남과 같은 지역에서 아직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례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의 필수조건은 아니겠지만 다른 시·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의 제정은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지렛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노동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을 위한 교육으로서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남 지역의 많은 관심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다감**

참고문헌

교육부(2019.1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인권으로서 '놀이 권리'

고영남 인제대학교 교수



‘놀이 권리’를 위한 역설, 코로나19

코로나-19가 어디에서, 그리고 왜 창궐하였는지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따져 보는 게 요즘의 유행이지만, 그 시작은 인류의 일방적 물질문명일 것이라는 짐작엔 이견이 없다. 단 하루면 지구의 반대편으로도 갈 수 있던 인류가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뒤주에 가둬 놓은 셈이다. 하지만 스스로 초래한 이런 감금 생활이나 수축사회의 모습은 치열한 경쟁 그리고 성장으로의 욕심에 의해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는지를 성찰해 본다. 그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삶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오히려 소수자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때 누군가의 ‘놀이 권리’는 하나의 의제로 떠오르게 된다. 아직 이 용어가 어색하다면 그냥 ‘놀이’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의 권리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모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 내지 학생(이하 ‘아동’이라고 함)의 ‘놀이 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적절할 것이다. 더욱이 ‘아동 권리협약’의 토대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아동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는 시대의 요구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먼저, ‘놀이권’ 즉, ‘놀이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의 권리’ 또는 ‘놀이 권리’는 아동의 인권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는가?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의하면, ‘국가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어서 ‘국가는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신체의 자유를 워낙 고전적으로 이해하여, 다시 말하여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만을 연상하다 보니 ‘아동권리협약’에서조차 ‘놀이 권리’는 한참이나 뒤쪽에 편재되어 있다.

‘놀이 권리’ 원년, 2020년

최근 한국은 국가 수준의 공통 ‘유치원 교육과정’, 즉 3세부터 5세까지의 교육과정을 법정화한 누리과정에 대하여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 추구’하도록 크게 개정하였다(2020.3.1. 시행). 유아 개인의 다양성과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면서도 이를 놀이 중심에서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놀이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적어도 유아의 경우 제법 넓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누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해야 하며, 결국 ‘유아가 놀이를 통하여 배우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교사는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와 실외의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진전과 함께 지적되어야 할 점은 ‘놀이 권리’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굳이 따져보는 일이다.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2019.10.24.)에 의하면, 휴식과 여가, 그리고 놀이는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 요소인데, 이는 모든 아동이 체육활동을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보장하고 모두가 여기에 안전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놀이 권리’는 최소한 유아에게만큼은 법적 보장 차원을 넘어 실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그리고 모두의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놀이 권리’의 보장 못지 않게 그것이 인권의 하나로서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일반논평 제17호(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고민을 더 깊게 나누고자 한다. 물론 그 목적은 ‘놀이 권리’의 보장에 대한 이해를 규범적 수준과 문화의 차원으로까지 높이는 데 있다.

‘놀이 권리’의 중요도

우려되는 점을 먼저 말하자면, ‘놀이 권리’를 포함하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대한 국가와 시민의 인식 수준이 무척 낮다는 데 있다. 이는 ‘놀이 권리’가 아동의 삶이나 전망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쉽게 무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놀이 권리’는 장애를 가지거나 이주민의 이력을 가진 아동에게 훨씬 더 제한적이다. 또한 경제적 변동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여러 형태의 폭력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은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혹은 거리에서조차 문화적, 예술적 활동 혹은 오락 활동을 하는 데 마찬가지로 제한적이다. 게다가 심각한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아동들에게 증가하는 교육의 공급과 수요는 이러한 ‘놀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단축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실이 그렇다고 하여 ‘놀이 권리’를 포함한 ‘아동권리협약’ 제31조의 중요성이 감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울러 ‘놀이 권리’를 고립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표현의 자유나 평등권 등 전통적 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즉,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그리고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는 제31조는 ‘아동권리협약’ 전체와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휴식 등 각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장 정도에 따라 아동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규정은 아동 시기의 고유하고 독특한 진화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데 필요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휴식과 놀이 등의 권리는 최적의 발달을 위한 아동의 기본적 인권이며, 무엇보다도 다른 권리를 실현하는 데 그 바탕이 된다. 결국 ‘놀이 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독자적 의미를 가지며, 다른 인권과의 관계에서도 그 배경이 되거나 촉진자가 된다는 의미다.

‘놀이 권리’의 기대효과

제31조를 비롯한 ‘놀이 권리’를 보장할 경우 예상되는 기대에는 무엇이 있을까? 놀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이며 창의력·상상력·자신감·자기 만족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지적·정서적·육체적·영적 힘과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배움의 모든 측면에 기여한다. 무엇보다도 놀이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아동에게 즐거움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제공한다. 유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놀이는 아동 발달의 중심인 동시에, 초창기의 두뇌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듯 놀이의 핵심적 가치는 재미, 불확실성, 도전, 유연성 및 비생산성에 있다. 특히 놀이는 아동 자신이 시작, 통제 및 구조화한 행동, 활동 또는 과정이며, 협상을 통해 감정적 균형을 회복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놀이 자체보다도 그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아동들은 주변 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생각과 상호 역할을 겪는 등 자신의 사회성을 획득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놀이를 포함한 제31조의 권리들은 언제나 ‘아동의 나이에 적합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나이나 발달을 고려하여 놀이에 필요한 요소들을 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과 그 환경의 특성, 자극과 다양성의 형태,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성인들의 참여 정도, 그리고 필요한 시간 등이 잘 조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도 최근의 누리과정에 이르러 아동의 ‘놀이 권리’가 전면화되었을 뿐,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 등의 ‘놀이 권리’는 조례 차원의 선언적 수준에 머물거나 침묵하고 있다.

‘놀이 권리’를 위한 전제들

그렇다고 적절한 시간과 공간만 제공되고 규범을 마련하면 ‘놀이 권리’는 자연스럽게 구현 될까? 아동들은 놀이를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며 또 그런 기회를 끊임 없이 모색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도 굳건하다.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여러 스트레스나 다른 요구로부터 해방되고 사회적 배제나 편견 그리고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불가치적인 경향의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는 등 사회적 유해나 폭력, 그리고 과도한 상업적 수요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자연환경과 동물계에서 경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공간과 시간에 집중하여 자기만의 상상력과 언어를 사용하여 세상을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 권리’가 구현되는 데 가장 큰 난제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에 못지않게, 위에서의 지적처럼 아동의 교육 성과에 대한 압박과 그 이데올로기일 것이다. 최근 누리과정의 대폭 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나 나라 밖에서나 유아 교육의 현장은

놀이의 기회를 희생시키며, 그 중점을 아동의 공식적인 학업적 성과로 옮기고 있음을 성찰하여야 한다. 아동들의 교육과정에는 물론, 그들의 하루하루의 일정에도 휴식을 포함한 놀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며, 놀이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결코 아동들의 능동성이 보장되거나 자연과의 접촉면이 확대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잘 지적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최근 아동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실외를 중시하는 공간의 관념만큼이나 아동의 창의성과 독창성 및 주도성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놀이 공간이 자연에 가깝게 제공되더라도 아동이 참여하는 놀이의 유형이나 정도를 제한할 경우 ‘놀이 권리’의 본질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또한 과도하게 체계적이고 계획된 일정은 놀이의 탄력적 성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아동들은 성인들이 결정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요구도 받지 않은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놀이 권리’는 근본적으로 협상하거나 주고 받는 권리의 속성보다는 원시의 성격을 지닌 인권이기 때문이다.

‘놀이 권리’의 한계

‘놀이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환경과 문화를 구축한대도 그 역시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몇 가지가 더 있다. 먼저, 놀이가 아동들에게 고정적인 성의 역할을 주입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다양한 직업이나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미래를 전망하여 장차 사회지도자의 역할에 역점을 두는 것이 남자 아동에게 맞는 놀이라고 소개되는 반면에, 여성 아동은 가정의 사적 영역과 아내나 어머니로의 역할을 지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자발성과 창의성 등 문화의 토대를 이루는 아동의 놀이에서부터 성차별의 씨앗이 뿌려진다면, 놀이는 성차별의 영구화를 위한 탁월한 도구로 전략하고 말 것이다. 그다음으로 우려되는 것은 빈곤 아동이다. 놀이에 이용할 사회적 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참여비용을 부담하는 데 공공성이 결여될 경우 빈곤 아동들에게 놀이 그 자체는 무력감과 소외감의 상징이 되며, 불평등을 향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놀이의 ‘공공성’이 그것이다.

‘놀이 권리’의 규범과 그 구현

놀이에 대한 관념은 이번 누리과정의 전면 개정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기본법’은 학습권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제3조)를 보장한다지만, 지금의 시대는 아동과 학생의 행복을 위한 인권으로서 ‘놀이 권리’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요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국가의 공공성이 담보하는 교육은 학습 그 자체가 아니라 ‘배움’이어야 하고, 그 배움에는 학습과 놀이가 적절하게, 그러니깐 나이의 발달에 맞게 하나의 인권으로서, 하나의 권리로서 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 자체의 가치에 침묵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역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내용을 학습과 놀이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배움 중심의 새 교육의 가치를 조례를 넘어 법률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하여야 한다. 물론 실정적 규범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전면적 구현이 담보되도록 교육행정과 사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는 두 해 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정책의 정립과 실행방안 모색>(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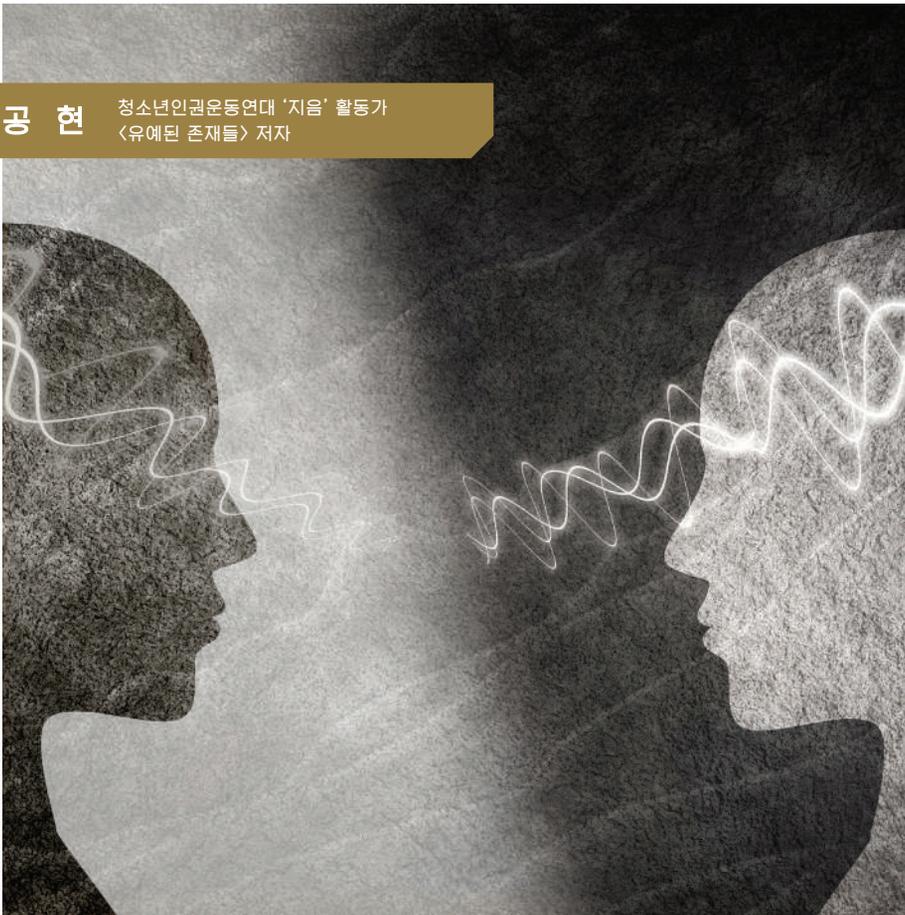
2018년)이라는 과제를 공동연구자들과 함께 수행하면서 몸(신체)의 자유 영역에서 '놀이 권리'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동시에, 이와 관련하여 두 개의 평가지표를 제안한 바 있는데, 그 하나를 소개하면서 '놀이' 내지 '놀이 권리'의 담론을 애써 기대해본다. 당시 공동연구자들은 '놀이 권리'와 관련하여 '학교는 학생의 발달 정도에 따른 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였고, 이런 새로운 인권의 규범에 기반하여 공교육 영역에서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교육청의 형편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당시 유아와 초등학생의 '놀이-책-밥' 운영 시간이 확보된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경상남도조례 제4372호, 2017.11.2. 제정)가 제정되는 등 긍정적인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한 바 있었다. 앞서 지적대로 조례를 넘어 법률의 차원에서 놀이가 포함된 새로운 배움의 가치를 구성해야 함은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이 권리'가 아동(학생) 인권의 규범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권리들을 가질 권리'의 대상, 즉 그

'권리들' 가운데 하나쯤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의 존재라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인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획득하려는 누군가의 끊임 없는 노력만 내일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다만**

인권, 보호를 넘어 사회권으로

어
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유에틴 존재들> 저자



2018년 하반기, ‘어린이·청소년인권페스티벌’에서 진행할 한 행사를 준비하려고 참석한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다. 내가 맡은 부분은 아니었지만, 페스티벌 전체 진행 상황을 공유하다 보니 부스 구성 이야기도 나왔다. 처음 기획안에서는 ‘표현의 자유’, ‘학교에서의 권리’, ‘보호의 권리’, ‘여가와 놀 권리’라는 4개의 주제로 각 4개씩 부스를 차리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참여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중에서 ‘보호의 권리’를 선호하는 측이 많아서 ‘보호의 권리’ 주제의 부스가 7개로 늘었고, 대신 ‘학교에서의 권리’를 주제로 하는 부스는 2개로 줄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기관이 선호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고스란히 보여 주는 사례였다.

인권 일반의 역사는 자유권에서 시작하여 사회권으로 권리가 확대되었다. 예컨대 1776년 <미국 독립 선언>,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 등을 주요한 권리로 선언하고 있다. 1900년대에 들어서야 생계를 보장받는 것, 기초적인

교육에 참여하고 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 등도 인간의 권리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초기의 인권 논의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비장애인 남성들이 주도한 것이었고, 이후에는 노동자, 빈민, 여성, 장애인 등이 평등을 요구하고 투쟁하며 인권의 영역을 확대해온 역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 인권의 역사는 마치 이러한 인권 일반의 역사와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발전해 온 듯이 보인다. 애초에 아동 인권에 관한 논의가 아동을 인간-시민으로 인식하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이자 ‘예비 시민’인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일 터이다. 배경내(2003)는 “아동은 ‘개인’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이 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존재이자 아동으로부터 개인으로 성숙하는 동안은 일정한 사회적 제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간주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아동이 인권의 보편성을 논의하는 데서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집단으로 남아 있다고 말한다.

그 결과, 오늘날 아동의 인권을 주장하는 일은 이종의 과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보호의 대상’이라는 틀을 넘어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보호받을 권리’로만 여겨져 온 아동의 사회권을 재구성하여 보장받는 일이다.

‘보호의 대상’을 넘어

청소년인권운동의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는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되어 왔던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 정책이 청소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청소년에 대한 보호 정책 중 상당수는 시혜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의 성격을 띠는 문제가 있다. 학교의 예를 들면, 청소년의 연애나 흡연 등을 학교가 징계하는 것도 청소년 보호가 청소년에 대한 통제나 처벌,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예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을 통제한다는 논리는 발전하면, ‘탈선을 막기 위해 두발·복장

규제를 해야 하고 야간 학습을 시켜야 한다’, ‘장래를 위해 강제로라도 공부를 시키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심지어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 중 하나도 청소년을 ‘정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사실상 청소년의 각종 자유를 제한하고 참여를 막는 데 ‘보호’가 구실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넘어서는 것은 청소년인권운동의 주요 과제였다. 한편으로는 상대적 으로 소홀하게 대해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했기에, 청소년의 사생활과 자유시간에 대한 권리, 참정권이 대두되었다. 사회권에 해당하는 교육권이나 건강권, 생존권 등은 이미 국가와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받는 경우가 많기에 청소년 인권운동의 이슈에서는 좀 더 후순위로 밀려나기도 했다.

청소년은 사회권의 주체인가

일반적으로 인권의 주요한 성격 중 하나로 '불가분성'을 꼽는다. 이는 인권은 각각 따로는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나 여가 시간 없이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해 봤자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결사를 만들거나 집회를 가지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는, 평등한 교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더 풍부하고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다. 사회권에 관해서도 똑같이 성립한다.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권리 없이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없고 노동권을 신장시킬 수도 없다.

청소년의 인권 역시 불가분하기에, 청소년을 인간-시민으로 존중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청소년의 사회권 보장도 보호받을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복지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청소년은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 배정 등에서 후순위가 되며, 결국 아동·청소년이 권리 침해에 더 취약해진다는 것은 것은 고전

적인 문제 제기이다.

교육 제도 역시 하나의 예이다. 한국 사회는 높은 교육열 속에 청소년에게 교육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을 교육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일방적 교육의 대상으로 위치시킨다. 그래서 국제 인권 기준에서 교육권 실현을 위해 요청하고 있는 여러 기준들(평등한 접근권 보장, 교육이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학습자가 감당할 만 해야 한다는 것, 교육은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고 잠재력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 등)은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교육은 인권 침해와 고통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동시에 풀어 가야 할 과제

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뜻도 아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은 ‘보호받을 권리’가 필요하다. 사고나 재난에 대해 예방조치와 구조를 받을 권리, 범죄로부터 지켜질 권리, 유독하거나 유해한 환경에 처하지 않을 권리 등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대개 ‘안전할 권리’, ‘건강권’, ‘신체의 자유’ 등으로 표현되는 권리들이다.

그러나 ‘성숙한 보통의 사람’이라고 전제되지 않는 이들 구체적으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에 관련해서는 권리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 권리보다 ‘보호’가 강조된다. 권리의 주체인 이들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 사이, 온전한 시민으로 대우받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에는 구분선이 그어진다. 그래서 보호받는 사람들에게는 권리의 언어가 지워지고 대신 그 집단의 특성만이 되풀이되어 언급되곤 한다.

청소년이 사회권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은 구분선을 지우고 권리의 언어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할 권리, 건강권, 발달권, 노동권, 교육에 대한 권리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다.

안전한 권리, 건강할 권리, 노동하고 교육할 권리. 즉 사회권을 이야기하고 보장받고자 하는 것은 시민으로 존중받고자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다. 시민은 독립적이고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지극히 사회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하고 개입하며 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하고 교육할 권리를 요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시민으로서의 행위인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대우받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를 유예하고 경쟁에 몰입해야 하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여가 시간과 경제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오로지 공부만 해야 하는 삶은 시민으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청소년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받고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먼저일지, 아니면 복지 제도와 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일지 묻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일 것이다. 이는 마치 리본 매듭처럼 양쪽을 동시에 붙잡고 당김으로써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존중받고 자유로워지는 것과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게 만드는 것은 동시에,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그 노력의 방향이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의 자리에 가둬 놓던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 역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감**

참고문헌

배경내, 2003,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아동 - 아동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조건의 탐색>, 진보평론 2003년 가을, 제17호.

교육에 던져진 질문들

경남교육정책매거진 **다감**

경남교육이슈를 소개하는 이슈플러스생각 2020-3호

포스트코로나

경남미래교육을 이야기하다

7월 28일 온라인에서 진행된 경남교육정책포럼을 요약해 전합니다.

발행인 | 이영주 발행일 | 2020.8.1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기조발제

포스트코로나시대

"일격강하가 대세라고 하는데 인간을 이해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9시에 일어나 집에서 주도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맞이나 될까요?"

교육의 방향은?

박남기 (양주교육대학교 교수)

첫번째 패널 발제

온라인수업에서

2020 NEIS 전국교원 224,894명 대상 설문 결과

- 1 원격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출석체크 56.6%
- 2 향후에도 원격수업 활용할 의사: 있다 44%

요구되는 전문성

전상운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파견교사)

기조발제

포스트코로나시대

"취약계층, 학습동기부족, 저학년 등 온라인 교육 약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초등교육은 오히려 대면교육의 중요성이 조망되었고 중등교사는 존재 이유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방향은?

박남기 (양주교육대학교 교수)

기조발제

포스트코로나시대

"스마트그(Smart+Analogue)학교 즉 학교와 교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외부 기관이 협력하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중심 블렌디드 러닝, 인간친화적인 에듀테크가 필요합니다."

교육의 방향은?

박남기 (양주교육대학교 교수)

두번째 패널 발제

비대면 학교에서

"방역 뒤에 교육이 숨은 형상" "학생 자치가 강조되고 학생회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학교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학생 자치인가?"

학생 자치

박경실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교사)

기조발제

포스트코로나시대

"미래에 관한 논의를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미래교육에 관한 논의는 지금의 경남교육예산과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방향은?

박남기 (양주교육대학교 교수)

기조발제

포스트코로나시대

"교육의 미래는 오늘이 만드는 것. 에듀테크가 만들 환상적인 배움의 세계를 위해 먼저 지금 우리가 꿈꾸는 배움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의 방향은?

박남기 (양주교육대학교 교수)

마지막 패널 발제

학교생태환경교육

"코로나 때문에 지구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겐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하나? 기후위기 비상행동 청소년 활동가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대전환

정대수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장학사)

첫번째 패널 발제
과외수업에서
 ...모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
 ...이든 원격수업 전환 가능성이 있다.
시가 부담없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기기 지원, 연수 확대,
 ...권 및 초상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되는 전문성
 ...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파견교사)

두번째 패널 발제
대면 학교에서
 ...러기 상황에서 부조리가 부각되듯
 ...이9 상황은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배제되는 불평등을 더 부각시켰다.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존중하고
 ...대안이든 비대면이든
 ...문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학생 자치
 ... 박경실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교사)

마지막 패널 발제
생태환경교육
 ...차기대교육 함께 살아가는 관계 배우기
 ...과 지역에서 함께 건강권과 안전권 확보
 ...의 교육청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현
 ...치 교육을 통해 지구공동체의 생태시민으로

대전환
 ...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장학사)



인포그래픽 이슈플러스생각

인포그래픽 이슈플러스생각③ _66
 경남교육정책포럼, 경남미래교육을 이야기하다

인포그래픽 이슈플러스생각④ _68
 경남교육정책에 대한 교직원 인식 조사

인포그래픽 이슈플러스생각⑤ _70
 2020.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I

인포그래픽 이슈플러스생각⑥ _72
 2020.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II

경남교육이슈를 소개하는 이슈플러스생각 2020-3호

포스트코로나

경남미래교육을 이야기하다

7월 28일 온라인에서 진행된 경남교육정책포럼을 요약해 전합니다.

발행인 | 이영주 발행일 | 2020.8.1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기초발제

포스트코로나시대

"원격강의가 대세라고 하는데 인간을 이해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9시에 일어나 집에서 주도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교육의 방향은?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기초발제

포스트코로나시대

"취약계층, 학습동기부족, 저학년 등 온라인 교육 약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초등교육은 오히려 대면교육의 중요성이 조망되었고 중등교사는 존재 이유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방향은?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기초발제

포스트코로나시대

"스마트로그(Smart+Analogue)학교 즉 학교와 교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외부 기관이 협력하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중심 블렌디드 러닝, 인간친화적인 에듀테크가 필요합니다."

교육의 방향은?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기초발제

포스트코로나시대

"미래에 관한 논의를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남미래교육에 관한 논의는 지금의 경남교육예산과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방향은?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기초발제

포스트코로나시대

"교육의 미래는 오늘이 만드는 것. 에듀테크가 만들 환상적인 배움의 세계를 위해 먼저 지금 우리가 꿈꾸는 배움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의 방향은?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첫번째 패널 발제

온라인수업에서

2020 NEIS 전국교원 224,894명 대상 설문 결과

- 1 원격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출석체크 56.6%
- 2 향후에도 원격수업 활용할 의사: 있다 44%

요구되는 전문성

전상윤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파견교사)

첫번째 패널 발제

온라인수업에서

2020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 언젠가 원격수업 전환 가능성이 있다. 모든 교사가 부담없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 기기지원, 연수 확대, 저작권 및 초상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요구되는 전문성

전상윤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 파견교사)

두번째 패널 발제

비대면 학교에서

"방역 뒤에 교육이 숨은 형상"

"학생 자치가 강조되고 학생회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학교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학생 자치인가?"

학생 자치

박영실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교사)

두번째 패널 발제

비대면 학교에서

"위기 상황에서 부조리가 부각되듯 코로나19 상황은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이 배제되는 불평등을 더 부각시켰다.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존중하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의견을 묻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학생 자치

박영실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교사)

마지막 패널 발제

학교생태환경교육

"코로나 때문에 지구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하나? 기후위기 비상행동 청소년 활동가에게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

대전환

정대수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장학사)

마지막 패널 발제

학교생태환경교육

1. 기후위기대응교육: 함께 살아가는 관계 배우기
2. 마을과 지역에서 함께 건강권과 안전권 확보
3. 학교와 교육청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
4. 다가치 교육을 통해 지구공동체의 생태시민으로

대전환

정대수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장학사)

설문조사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경남교육이슈와 현장의 생각을 소개하는 이슈+생각 2020-4호



조사 개요

※ 다양한 경남교육 정책 중 범주에 따라 10가지 정책을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 배움중심 교육정책

- 학습더딤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
- 교육본질중심 학교운영 기반 조성 (행사 간축, 업무처리 간소화, 합리화인 업무 분담)

● 학생중심 교육정책

-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특기적성을 살리는 방과후학교 운영
- 모두가 주인공 되는 학교 자치 활성화 - 학교폭력예방 대응 역량 강화

● 미래교육정책

-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미래형 학교 공간혁신사업 운영
- 상상을 현실로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사대상

경상남도 지역 유,초,중,고, 특수학교 교원 및 비교원 교직원 전체

조사기간

2020. 8. 25.(화) ~ 9. 1.(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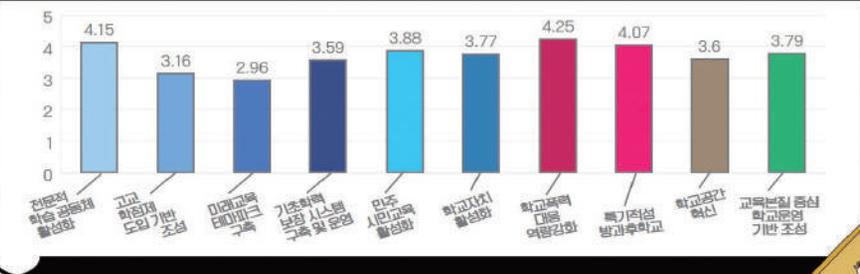
조사규모

4,418명 응답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1.4%p

- 교직원들은 경남교육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음. 특히 10가지 정책 중 7가지 정책에서 필요도가 이해도 보다 높게 나타나 경남의 교직원들이 경남교육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상대적으로 미래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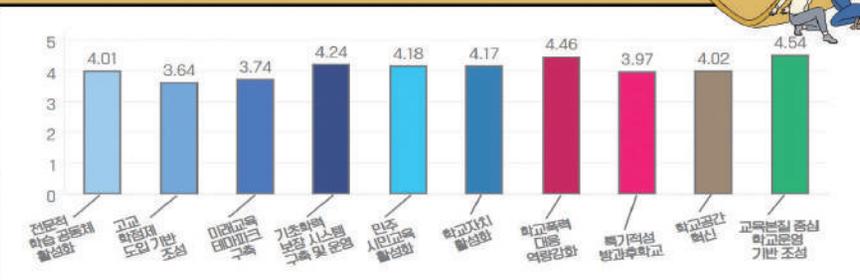
정책 이해도

경남교육정책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5: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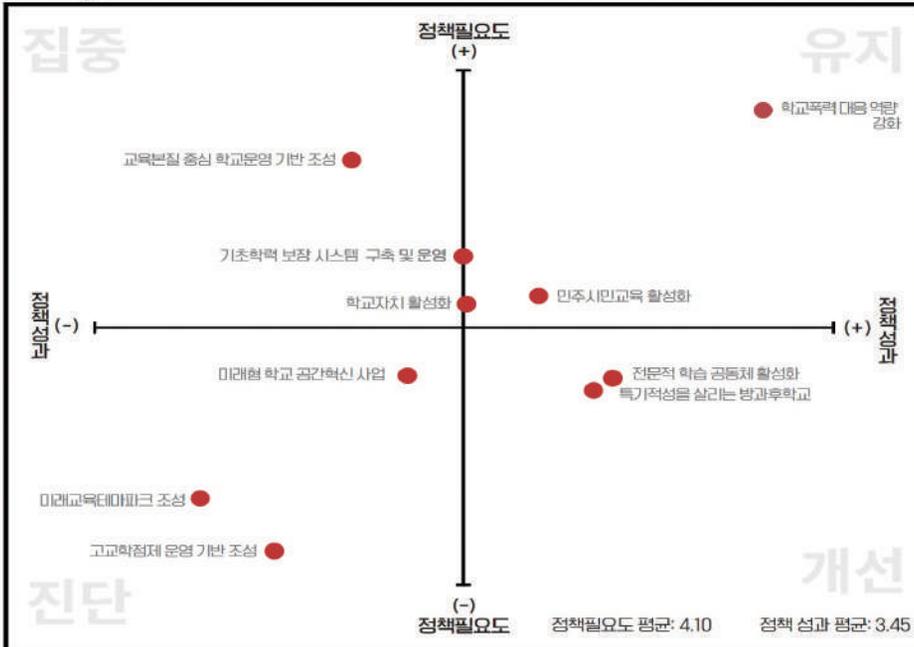


정책 필요도

경남교육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5: 매우 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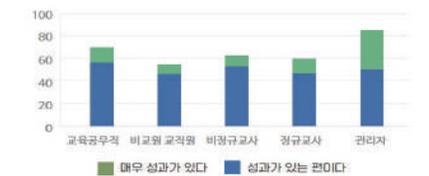


설문조사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경남교육이슈와 현장의 생각을 소개하는 이슈+생각 2020-4호



직렬별 정책성과 인식

교육본질중심 학교운영 기반 조성(전시성 행사 감축, 업무차리 간소화, 임의(적 업무분장) 정책의 성과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십니까?



직렬별 정책이해도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와 '특기적성을 살리는 방과후학교' 등 성과인식은 높으나 필요도가 낮게 나타난 정책들은 추진 방법에 대한 개선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미래교육관련 정책들은 이해도와 성과 인식이 동시에 낮게 나타나 교육 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설득의 노력이 보다 요구됨.
- 관리자 집단의 정책이해도와 성과 인식이 다른 집단보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높음. 이는 정책과 관련된 소통이 관리자 중심, 혹은 공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교직원과 정책 간의 접점을 넓히고 교육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발행인 이영주 | 발행일 2020. 9. 15. |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설문조사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경남교육이슈와 현장의 생각을 소개하는 이슈+생각 202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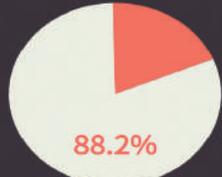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①

- 인권수준 인식

2020-5호와 6호는 11월 3일 학생의날을 기념해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연속하여 소개합니다.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0. 10. 6. ~ 10. 12. (7일간)
- 대상: 경남 초5~고3 학생
- 규모: 총 응답자 22,941명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0.63%p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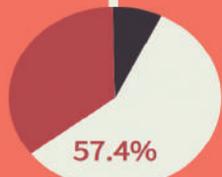
학교 인권교육에 만족하십니까?

88.2%의 학생들이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만족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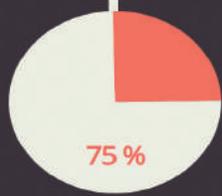
긍정답변: 88.2%
(매우 그렇다 40.6%, 조금 그렇다 47.6%)
부정답변: 11.8%
(매우 그렇지 않다 4%, 조금 그렇지 않다 7.8%)

경남지역 학생인권보장수준

57.4%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경남지역에서 학생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긍정답변: 57.4%
(매우 좋다 21.9%, 좋은 편이다 35.5%)
중립답변(다른 지역과 비슷하다): 35.16%
부정답변: 7.5%
(좋지 않은 편이다 5.4%, 매우 좋지 않다 2.1%)



학교의 관심과 노력

75%의 학생들이 학생 인권과 행복에 대하여 학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닌 기간이 길수록 학교의 관심과 노력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인면과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라고 답변 비율

발행일 | 2020. 10. 15. 발행처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②

- 인권교육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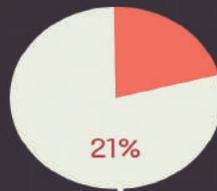


2019~2020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학생들은 폭력 및 성폭력예방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경험을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인권교육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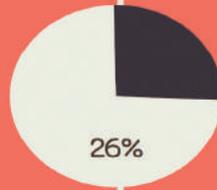
급식에서 대체 식단 제공

알레르기, 채식 지향, 종교 등으로 급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 21%의 학생들이 대체식단이 제공된다고 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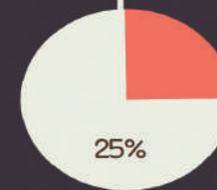
종교활동 시 대체프로그램 보장

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학생 1,259명 중 26%는 종교활동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대체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답했습니다



생리 공결 인정

25%의 학생들이 생리 공결이 잘 인정된다고 답했습니다



To be continued

경남학생인권실태조사의 내용은 이슈+생각 2020-6호로 이어집니다. 이슈+생각 2020-6호는 학생의 날을 기념해 11월 초에 발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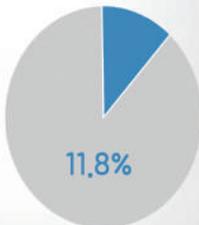
설문조사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경남교육이슈와 현장의 생각을 소개하는
이슈+생각 2020-6호



2020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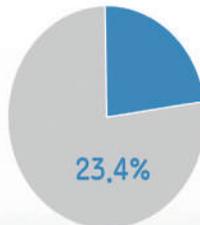
1쪽

1 직접 체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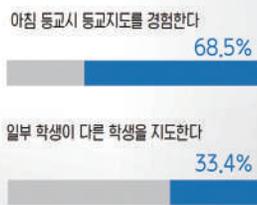
2019~2020년 동안 직접 체벌을 경험한 비율
직접 체벌: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해리는 행위와 벌

2 간접 체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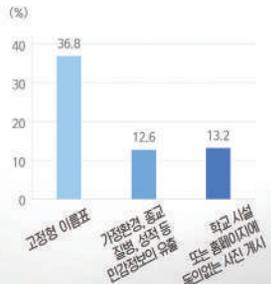


2019~2020년 동안 간접 체벌을 경험한 비율
간접 체벌: 팔 들고 서 있기만 같이 특정 행동을 강제로 하게 하는 행위와 벌

3 교문 지도



4 정보권 침해



2020 경남학생인권 실태조사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0.10.6.~10.12. (7일간)
- 대상: 경상남도 초5~고3 학생
- 규모: 총 응답자 22,941명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0.63%p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조사

인권 침해 실태

- 체벌 경험 비율이 여전히 상당함
-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도하고 검사하는 인권침해 경험의 비중이 높음
- 고정형 이력표 등 수년간 시정 권고가 있었음 인권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발행일 | 2020. 11. 3. 발행처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발행인 | 이영주

설문조사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경남교육이슈와 현장의 생각을 소개하는
이슈+생각 2020-6호

2020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1 인권침해 대응 역량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마주했을 때 실제로 한 일

2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



학교 의사결정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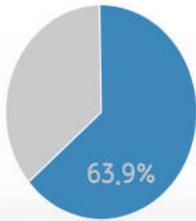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학생들이 참여는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학생 자치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의 보장이 더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발행일 | 2020. 11. 3. 발행처 | 경상남도교육청



2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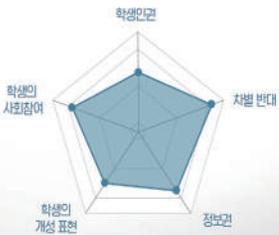
인권침해에 대해 실제로 한 적이 있는 일은?



'실제로 행동한 내용이 없거나 모르겠다' 응답 비율

3

영역별 인권 지지 수준



인권 인식과 역량

- 학생인권과 개성표현 등 스스로의 인권에 대한 지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인권침해에 대하여 63.9%의 학생들이 '행동한 내용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해 인권의 중요 자료 학생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경남교육이슈와 현장의 생각을 소개하는
이슈+생각 2020-6호

학생의 날 기념 인권선언문 모음

3 쪽



80주년 학생의 날 선언문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저항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져갔던 그 사건, 우리가 '학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온 그 사건 이후 80년이 흘렀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인이기 때문도, 그것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도 아니다. 잘못된 교육과 사회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선 학생들의 용기와 저항정신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1월 3일은 그 이후로도 제국주의나 독재 반대, 교육민주화 등을 외치며 학생들이 행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 왔다. (중략)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압과 차별, 불의를 참아 가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 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인권을 차별 없이 존중받는 것, 우리에게 의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학교와 교육을 만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욱 더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이 사회의 의무임을 선언한다.

1. 인권의 무덤에서 어떤 좋은 교육을 하실건가요? 학생인권보장!
 1. 학생을 죽이는 막장교육도 교육인가요? 무한경쟁교육 중단!
 1. 학생들이 아메바로 보이나요? 표현의자유, 정치적권리보장!
 1. 잘려야 할 사람은 양심교사가 아닐 텐데요? 해직교사복직!
 1. 교육도 땅파서 할까요? 교육예산 확충! 교육환경개선!
- (이하 생략)

2009년 11월 3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90주년, 학생저항의날 선언문] 이제는 학생 저항의 날, 청소년도 시민이다!

(전략) 저항하는 청소년들의 존재는 외면받고 가려진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한다. 일제강점기, 광주의 학생들과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청소년이 일제의 억압에 맞서 항거했다. 독재에 맞선 4·19혁명에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그 시작이었으며, 70년대 노동운동과 80년대 고등학생운동으로 이어지는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도 언제나 청소년들은 저항의 주체였다. 2008년 촛불집회 또한 청소년들이 처음 시작했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던 광장에도 청소년들은 함께 했다.

(중략) 역사 속 청소년들의 저항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곁에 되살려야 한다. 모두에게 기억되는 청소년 저항의 역사는 현재에 살아 숨 쉬는 기념일이 되어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저항 기반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불합리한 현실에 저항했던 모든 학생-청소년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학생 저항의 날을 새롭게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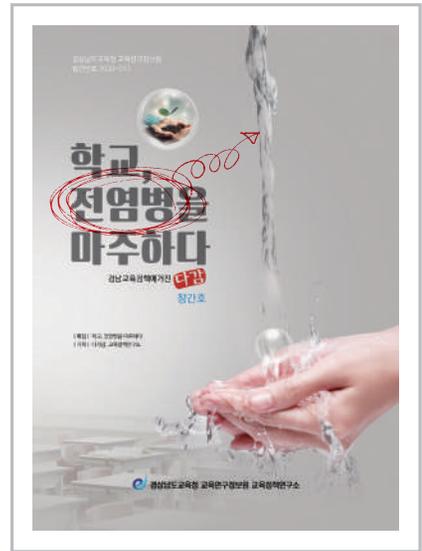
1. 청소년은 스스로 온전한 권리와 저항의 주체이다.
2. 청소년에 대한 모든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라.
3. 청소년에게 박탈된 권리를 사회 모든 곳에서 온전히 보장하라.

2019년 11월 2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일하는청소년연대(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바로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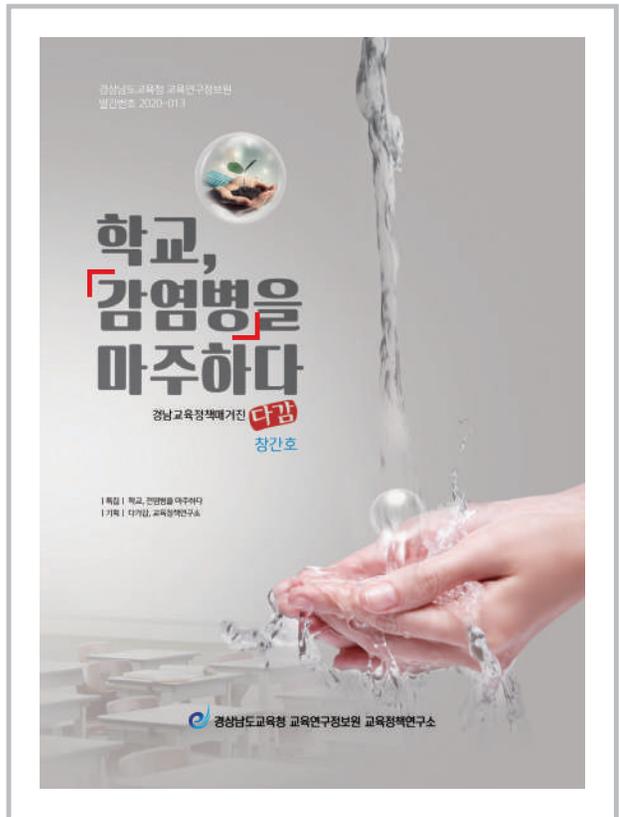
경남교육정책매거진 「다감」 1호의 특집 제목은 '학교, 전염병을 마주하다'였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염병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감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염병'과 '감염병'이라는 말이 모두 일상생활에서는 함께 쓰이는 말이지만 공식적인 언어 사용에 미흡함이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귀중한 독자님이 계셨습니다. 보내주신 글을 옮깁니다.



독자 의견

김영애 석동초등학교 보건교사



직업이 보건교사라서 그런지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낯이 익었다. 지금은 감염병으로 통일되어 사용하는데 왜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궁금증이 일어났다. '예전에 썼던 용어가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감염이라는 단어 대신 전염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차이를 간단히 적어보고자 한다.

사람도 동물도 감염병에 노출되고 이러한 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있지만 이름이 다르다.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감염병예방법」, 가축에게 적용되는 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다. 사람의 전염병에 대처하는 법률로서 「전염병예방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으나 2009년 12월 29일 법률의 명칭을 「감염병예방법」으로 바꾼 개정안이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 하기 위해서이다.

좀 더 쉽게 감염과 전염의 의미를 살펴보면,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갑자기 그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감염이라 하고, 감염으로 인해 병이 나는 것을 감염병이라 한다. 하지만 모든 감염병이 항상 남에게 옮는 것은 아니다. 감염병 중에서도 사람간의 접촉이나 물 또는 공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옮을 수 있는 질병이 있고 이런 질병들을 전염병이라고 부른다.

일부 질병은 전염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라는 용어 탓에 불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염병을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바뀌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의미들에서 살펴봤듯이 이번 창간호 제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양호교사에서 보건교사로 그 명칭이 바뀐 것처럼 10년 전부터 전염병이라는 단어 대신 감염병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의 정책과 방향성을 이끌어내는 책자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게 '아직 감염병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고민이 얕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학교 감염병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남긴다. **김관**

교육에 던져진 질문들

경남교육정책매거진 **다감**

2020. Vol. 2. 경남교육정책매거진 다감

편집기획

차재원 | 교육정책연구소장
박영식 | 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이희진 | 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

편집위원

김영환 | 창원명곡고등학교 교사
김정하 | 영산중학교 교사
남정미 | 가촌초등학교 교사
류주옥 | 거창연극고등학교 교사
박도영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구성작가
박현석 | 도동초등학교 교사

인쇄일

2020. 11.

발행일

2020. 11.

발행인

이영주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51141)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11번길 20
누리집: gerii.gne.go.kr
TEL: (055)269-0777 FAX: (055)269-0789

* 본지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